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 북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차 례

발간사	6
제1장 중앙아시아 시장 개관	9
1. 중앙아시아 개관	11
2. 중앙아시아 시장의 매력	14
3. 중앙아시아와 한국	17
제2장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환경과 애로사항	25
제3장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사항별 해소방안	43
1. 애로사항 설문과 분석	45
2. 주요 애로사항 해소방안(15개항)	56
가. 카자흐스탄	56
- 현지비자 발급 장기소요 및 절차 복잡(A사)	56
- Engineering 설계용역에 대한 현지 과세(B사)	60
- 노동허가 및 쿼터 문제(C사)	64
- 통관서류 작성 및 절차 간소화(D사)	68
- 육가공품 통관문제(E사)	71
- 운송기간 지연 문제(F사)	73
- 진출 한국기업들의 금융상의 애로사항(G사)	74



나. 우즈베키스탄	78
- 외화 환전 문제(H사)	78
- 통관 문제(I사)	83
- 복잡 과다한 세금(J사)	85
- 복잡한 비자 발급 문제(K사)	90
- 진출 한국기업들의 금융상의 애로사항(L사)	92
다. 기타 국가	96
-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비자 발급 문제(M사) ...	97
- 타지키스탄으로 수출 보험 문제(N사)	105
- 투르크메니스탄 자금조달 문제(O사)	107
제4장 국가별 진출시 유의사항과 비즈니스 프로토콜	111
1. 카자흐스탄	113
2. 우즈베키스탄	116
3. 투르크메니스탄	119
4. 키르기스스탄	120
5. 타지키스탄	122
참고자료	123
참고 1. 중앙아시아 5개국 국가별 현황	125
참고 2. 중앙아시아 한국 기관 및 주요 웹사이트	130
참고 3. 뉴 실크로드협의회(NSR) 소개	131
참고 4. 각국 정부조직도	133



* 표 차 례

<표 1> 중앙아시아 국별 주요경제지표와 성장 전망	13
<표 2> 중앙아시아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15
<표 3> 카자흐스탄 신투자법 주요 내용	27
<표 4> 카자흐스탄의 기업환경 지수	29
<표 5> 한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시 애로사항	31
<표 6>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	34
<표 7> 키르기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	39
<표 8> 타지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	41
<표 9> 비자규정변경 이전의 주요 상용비자 카테고리	57
<표 10> 비자규정변경 이후의 주요 상용비자 카테고리	58
<표 11> 비자규정변경 전후 주요사항 비교	58
<표 12> 노동허가 카테고리 별 자격 요건	65
<표 13> 취업허가 발급절차	65
<표 14> 주요 환전 대상 기업	80
<표 1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 징수 세율	87
<표 16> 관광 상용비자의 종류	91
<표 17> 국영상업은행의 특화	93



* 그림 차례

[그림 1] 중앙아시아 지도	12
[그림 2]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 현황	18
[그림 3]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20
[그림 4] 카자흐스탄 통관절차	69
[그림 5] 우즈베키스탄 통관절차	84



발 간 사



한국과 중양아시아 국가들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1년 동안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협력, 기후변화, 자원협력, 북핵문제, 대테러 등 국제이슈에 이르기까지 국가간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양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자원에서부터 금융, IT, 플랜트 분야 등에 진출하여 다수의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진출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체제전환기의 중양아시아에는 어떤 나라도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새 시장 개척이라는 기업이 정신으로 중양아시아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1998년 IMF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현지인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중양아시아 교역규모는 1994년에 4억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에는 33억9천만 달러로 약 12.6배나 증가하였고, 투자의 총 누적액은 약 3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아티라우 석유 화학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투자는 1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한국에 있어 중양아시아는 신시장이라기보다 성숙한 시장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모를 보다 더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야 할 전략적인 시장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반 성장하는 전략적 협력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통상협력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지금, 중양아 진출 기업들의 애로요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 아쉽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중양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 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 북의 특징은 첫째, 바로 이렇게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투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이드 북은 발로 뛰면서 수집한 진출 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설문을 통해 발굴하고, 그에 대한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이 가이드 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비자, 노동허가 및 쿼터, 외화환전, 통관, 금융 등)들의 생생한 정보와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가이드 북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현지 진출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중앙아시아 현지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에게 향후 애로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민간차원의 접근 방식과 별도로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 북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뉴 실크로드협의회 2013년도 주관 기관으로 수고해 주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협의회 분과별 임원들, 특히 집필을 총괄하신 고려대학교 윤성학 교수님, 바쁜 시간에 정확한 정보와 애로 해소 방안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 북이 중앙아시아 시장, 나아가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 1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도 경 환

CENTRAL ASIA NATION

CENTRAL ASIA NATION

제1장 중앙아시아 시장 개관





제1장 중앙아시아 시장 개관



1. 중앙아시아 개관

중앙아시아¹⁾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19세기말 러시아와 영국이 ‘거대한 게임(Great Game)’을 전개한 지역이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한편, 카스피해 연안과 키질쿰 사막 등 내륙 지역의 원유·가스 등 전략광물 자원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들간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장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중국의 신장성, 서쪽으로 카스피해, 남쪽으로 이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을 잇는 이슬람 국가들과 접해 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991년에 탄생된 신생 5개 독립 공화국의 면적은 약 4백만㎢로 한국의 40배이지만 인구는 6,500만 명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는 높은 고원과 산맥, 거대한 사막, 나무 없는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후는 여름과 겨울 사이에 1년간의 온도가 섭씨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뚜렷한 대륙성 기후이며 대부분 연강수량 250mm 이하의 건조지대이기도 하다. 토지는 갈색 스텝과 사막토, 고산토가 대부분으로 농업을 위해서는 관개 작업이 필수인 반면 세계적 규모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1) 알렉산드르 훔볼트(Alexander Humboldt)는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을 남북으로 히말라야 산맥과 알타이 산맥과 동서로는 카스피해와 만주 사이로 규정한다. 여기에다 투르크와 이슬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으로 분류할 때, 현재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중앙아시아(Soviet Central Asia) 5개국과 카스피해의 자원대국 아제르바이잔,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5개국을 다룰 것이다.



[그림 1] 중앙아시아 지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과 풍부한 천연자원은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열강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한국과 터키 등 특정한 연고를 가진 국가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였지만 2000년대에는 EU, 미국, 중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자원, 통신,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왕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고통스러운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거쳤으며,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에 들어섰다. 2002년~2007년 기간 동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은 8.8%,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14.5%의 높은 복합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원 수출 중심의 중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켜 2009년과 2010년에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표 1> 중앙아시아 국별 주요경제지표와 성장 전망

	면적	총인구	인구밀도	1인당 GDP	GDP	경제성장률(%)	
	Km ²	천명	인/Km ²	달러	억달러	2012년	2013년
카자흐스탄	2,720,000	16,700	5.7	11,762	1,954	6.0	6.0
우즈베키스탄	450,000	29,800	61.6	1,717	512	8.0	7.0
투르크메니스탄	517,000	5,030	10.3	5,550	336	11.1	10.0
타지키스탄	140,000	8,009	48.9	860	69.8	7.9	6.0
키르기스스탄	200,000	5,582	26.9	990	64.7	-0.8	5.0
전 체	4,000,000	65,121	42 (평균)	4,175 (평균)	2,936 전체	6.4 (평균)	6.8 (평균)

자료 : World Bank, IMF 종합하여 재구성.

2011년부터 중앙아시아 경제는 지난 3년간의 경기위축을 극복하고 과거 고도성장에는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카자흐스탄의 성장률이 6%, 우즈베키스탄은 8%, 투르크메니스탄은 무려 11.1%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였다. 중앙아시아 경제의 재부상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아시아 정부들의 적극적인 사회 인프라 투자²⁾도 한몫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가스 등 자원의존적 경제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경기가 좌우되어 경제가 불안정하므로 경제시스템의 현대화, 산업다각화, 산업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도로, 철도, IT 등 사회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BRICs 3개국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2020년경에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발전전략 2020’을 바탕으로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 중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위기극복 프로그램(2009~2012)’, 투르크메니스탄도 ‘경제발전전략 2020’을 추진하고 있다.



2. 중앙아시아 시장의 매력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 그렇게 매력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점, 높은 인구증가율 등은 장기적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다. 반면 중앙아시아가 갖고 있는 열악한 기업환경과 부정부패, 권위주의 정권, 내륙국가로서 물류적 한계 등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에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도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갖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 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 투자 매력도가 높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에 향후 투자 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 고정자본 형성에서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구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제도와 교육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의 능력도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 2> 중앙아시아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경제적·정책적 요인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		인프라 요인	법·제도 요인
	경제	정책	자원부존	산업		
카자흐스탄	3	3	3	3	3	3
키르기스스탄	1	2	1	1	2	3
타지키스탄	1	2	1	1	1	2
투르크메니스탄	2	1	3	2	1	1
우즈베키스탄	3	1	2	3	3	2

* 3점이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1점이 낮은 것을 나타냄.

자료 : 조영관 외(2010), “중앙아시아 투자매력도 연구”, KIEP.

법과 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최소설립자본금 측면에서 볼 때 키르기스스탄의 최소설립자본금이 2.1달러로서 가장 작고,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이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에 있어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 제공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국유화 과정에서의 투자 자산 보장에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가격 보상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아 투자매력도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 과실송금의 경우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실송금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 가장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두 번째로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과 투자 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앙아시아와 한국

가. 한-중앙아시아 교역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을 시작하였는데 공식적인 무역통계가 처음 잡힌 1994년에 교역 규모는 4억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에는 33억9천만 달러로 약 12.6배나 증가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은 1990년대는 주로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는 건설, 기계류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주춤하였던 한-중앙아시아 교역은 2010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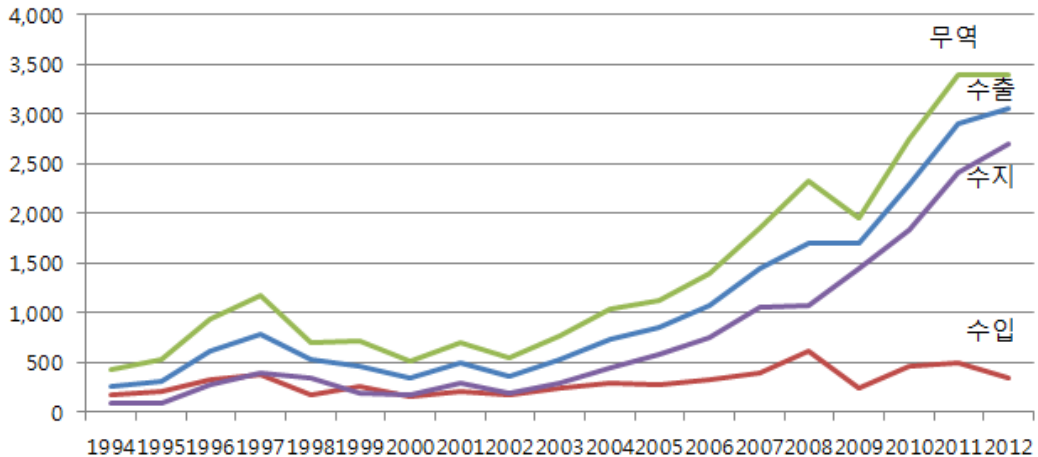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9년 4.7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교역 규모는 2012년 약 1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양국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도 물류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비중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이 70%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도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외무역 전체 규모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교역량은 총 교역량의 0.3~0.5%에 머물고 있는데, 수출은 총 수출의 약 0.5%, 수입은 총수입의 0.1%에 불과하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승용차, 편직물, 건설 중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알루미늄 합금철, 우라늄, 면사, 천연섬유 원료 등 자원 부문에 집중해 있다. 2011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수지 흑자는 약 3억8천만 달러로 수교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 현황

(단위 : 1만\$)



자료 : KITA(2013)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교역이 증가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은 증가하였는데, 2008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였다. 2012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7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수입은 4천2백만 달러로 압도적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 관련제품(승용차, 부품, 원동기 등)으로 총 수출액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제품을 제외한 주요수출 품목으로는 합성수지, 편직물, 기타가구, 아연도강판 등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교역도 시기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부터 무역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로 양국간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카자흐스탄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감소하였지만 이후 경제가 안정화



되면서 교역은 또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9년 4.7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양국간의 교역 규모는 2012년 11억 달러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두 나라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교역 확대 가능성은 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의 특징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류와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고 반면 중앙아시아로부터는 원자재인 비철금속, 면제품 및 가죽 등을 수입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부품 관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완성형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수입은 초기에는 원면과 알루미늄 재료 등 1차 원자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면사, 면직물 등이 증가하고 반면 원면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물류 문제 때문에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글로벌 상품시장이 확대되고 한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원자재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한-중앙아시아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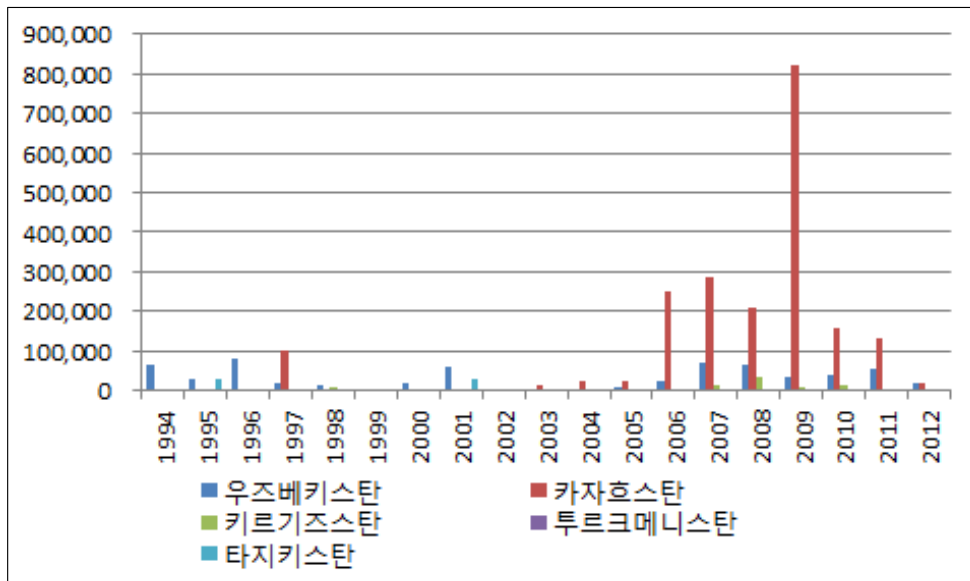
199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의 총누적액은 약 27억 8천만 달러이다. 이금액은 전체 한국의 해외 투자금액의 0.7%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는 1990년대 대우의 우즈베키스탄에 자동차, 전자, 면방 분야 투자를 들 수 있으며, 2000년대에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부동산, 자원 개발 투자가, 그리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2008년 국민은행은 7억 달러를 투자하여 당시 업계 6위인 BCC은행을 인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에 숨베사를 3.6억 달러, 2011년에 알티우스사를 5.15억 달러에 인수했다. 2013년 7월에는 롯데제과가 라하트라는 카자흐스탄 1위 제과업체를 1.57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수했다. 2013년부터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의 아틸라우 석유화학단지,



발하쉬 화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40억 달러 규모의 수르길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양 아시아 투자는 2013년을 고비로 지난 20년간의 투자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투자 현황

(단위 : 1천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3).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주로 건설, 금융,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다. 2006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 투자 및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은행 지분인수, 신한은행의 현지법인 출범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알마티 지역에 총 55개, 아스타나시에 1개 등 56개 기업이며 진출의 형태는 현지법인, 연락사무소, 지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 오랫동안 진출한 한국기업은 삼성



물산, (주)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주)에코비스 로지스틱스, 동일하이빌, 우림 카자흐스탄, 실로 에너지, 현대종합상사, 국민은행, 영진 Global Logistics, (주)CAM, LG상사 등 총 13개 기업들이 있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는 삼성 물산의 카작무스(Kazakhmys)의 위탁경영³⁾이다. 카작무스는 카자흐스탄 중부, 남부 및 북동쪽에서 구리를 채굴, 제련하는 대표적인 원자재 회사였지만 한때 체불임금과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천덕꾸러기 기업이었다. 삼성물산은 1996년 6월 카작무스의 전신인 제스카즈간 동광 콤비나트(일종의 구 소련식 생산 클러스터)를 5년간 운영하면서 이 부실기업을 런던 증시의 상장 회사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의 또 다른 핵심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지만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내수 침체 등으로 한국의 대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수교 이후 2011년 기준으로 총 170건에 5억 8,987만 달러이다. 2012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51개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나보이 지역에 한국기업들이 진출중이며 특히 ‘대한항공’의 물류 센터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으로는 (주)대우인터내셔널, 한국가스 공사, 산업은행, 대한항공, 롯데, 동남모터스, 한국석유공사, 신동, LG전자 등이다.

일찍부터 우즈베키스탄의 가능성을 높게 본 대우는 투자 여건이 어려웠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에 적극 진출하였다. 대우의 전략은 우즈베키스탄을 CIS 및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생산거점 국가로 선정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였다. 대우가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Uz-Daewoo

3) 위탁경영 조건이란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3~5년간 외국기업에 경영을 위탁하고 판매권을 외국 기업에 맡기는 대신, 외국기업 스스로 긴급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을 정상화(연체된 채무 상환, 노후화된 시설 개체,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생산량 증대)해달라는 조건이었다.



Auto⁴⁾는 아사카공장을 단순한 CKD(조립생산) 기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대우는 달러 결제자금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면과 금을 수입하고 그룹의 중점사업인 자동차와 전자 제품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여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인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판매하는 전형적인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세계 5위의 원면 수출국으로 풍부한 현지의 원면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의 면사 및 면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대우는 페르가나주에 DTC 면방공장을 1996년 설립하여 방적 7만추, 직기 179대 등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연간 면사 1만 4천 톤을 생산하여 3,5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후 페르가나 갑을, 부하라 공장 등을 증설하여 우즈베키스탄 최대 면방업체가 되었다. 대우텍스타일의 성공 요인은 사업 착수 이전에 토지 사용권, 세금, 원료 구입 조건 등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경영상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였다. 또한 100% 단독투자자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간섭 없이 계획 생산량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는 초기에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가 2000년대 부터는 자원개발, 건설 분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 플랜트 분야 등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9년 카자흐스탄의 센터 크레디트은행(BCC)을 인수하여 2011년, 2012년 연속 200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신한은행도 현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산업은행이 UzDaewoo 은행과 RBS Uz를 인수합병하며 외국계 1위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수교는 2013년 현재 벌써 21년이나 된다.

4) 대우자동차가 2002년 GM에 인수됨에 따라 UzDaewoo Auto도 결국 2008년 유럽 GM에 인수 되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는 수교 21년 동안 정상들간의 방문이 22차례나 진행될 정도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구소련 시절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자격으로 1990년 11월 23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독립 이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1995년, 2003년, 2010년 세 차례 방문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2년 6월 16일 첫 방한이후 이후 무려 7차례나 한국을 다시 방문하였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들과도 신뢰와 호감을 쌓았다. 20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1, 2위를 다툰 정도로 높았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여기에는 한국기업이 일찍부터 이 지역에 진출하여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약 30만 명에 이르는 연해주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의 좋은 이미지도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2011년말 기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는 약 2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인은 이 가운데 2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지만, 아직까지 경제협력 규모는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의 부재,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채널 구축의 미흡,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법적·제도적 미비 등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 진출을 새롭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CENTRAL ASIA NATION

CENTRAL ASIA NATION

제2장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환경과 애로사항





제2장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환경과 애로사항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1년 구소련방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회간접자본 확충, 광물자원 개발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각종 투자관련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투자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해온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였다.

<표 3> 카자흐스탄 신투자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비고
내·외국인 구분폐지	- 구 외국인 투자법 폐지 - 투자자를 내·외국인 구별 없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개인, 법인으로 규정	1조 6항
투자법 지위 약화	- 구법의 예외사항을 없애고 ‘기타 법규에 우선적용’ 조항 삭제 - 투자 실행상 카자흐스탄의 타 법률에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한 동법의 적용 배제 -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투자운영과 관련 카자흐스탄 관련 법규를 직접 적용	2조 3항
국유화 및 수용 관련 투자보장 약화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보상은 존속 - 구법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에 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	



	주요내용	비고
환경 안정성 보장 조항 변경	국법에서는 법률 변경에 의한 투자자 지위 약화시 투자 당시 법률 최소 10년 적용 규정	4조 3항
투자 안정성 보장 조항 변경	신법은 국익, 환경보호, 보건, 사회 풍속 관련 등 법규 변경시와 물품의 수입, 제조, 판매 절차 및 조건 관련 법규 제정시 보장 예외를 명시	
우선 투자 분야 지정 및 우대 부여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부 우선투자분야 지정 - 우선투자분야에만 관세, 조세 등 혜택을 부여 - 조세, 관세의 우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	
투자 분쟁 중재	- 투자분쟁의 경우 당사자 합의시 국제 중재기관 제소 가능 조항 존속 - 투자분쟁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외환 관련	국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외환의 지체 없는 국내외 이전보장 조항을 삭제	

자료 : KOTRA

카자흐스탄은 신투자법을 바탕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외국인직접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2015 산업혁신전략’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5년간 토지세 및 재산세 면제,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고정자산 가속상각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투자 프로젝트 관련하여 최대 5년간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경제 및 외환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대규모 석유 가스 개발투자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자원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조세제도는 대체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외국인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법인세율 20%, 부가가치세가 12%로, 개인소득세가 10%로 인하되었다. 내국인의



환전 자유화 및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 허용을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외환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외환 반출을 위해서는 계약서 사본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거래허가서와 송장 사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출입 관세를 낮추고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은 8.6%로 WTO 평균인 6~7%에 근접하였으며, 러시아 및 벨로루스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수출세는 없으며 수출관리제도와 무역관련 법규의 정비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 카자흐스탄의 기업환경 지수

항 목	DB 2013 Rank	DB 2012 Rank
창 업	25	55
건 축 관 련 인 허 가	155	150
전 기 연 결	80	81
재 산 권 등 록	28	28
자 금 조 달	83	97
투 자 자 보 호	10	10
세 금 납 부	17	16
국 제 교 역	182	178
채 권 회 수	28	28
퇴 출	55	55

자료 : IFC(2013)



카자흐스탄의 기업환경 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2012년 56위에서 7단계 상승한 49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창업 분야에서 30단계나 상승하였으며 자금조달 분야도 14단계나 상승하였다. 반면 러시아 주도 관세동맹 가입 이후 국제교역 분야에서는 4단계가 하락하였다. 고질적인 부패의 온상인 건축 관련 인허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의 국가리스크도 줄어들고 있는데, 2012년 11월 기준 신용3사 평가등급은 BBB+(S&P), Baa2(Moody's), BBB+(Fitch)를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안정적인 재정 구조, 풍부한 외환보유고, 낮은 국가 부채 비율, 유가약세(80\$) 시나리오 하에서도 국가 재정이 플러스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투자의 애로점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동허가 절차 복잡하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공사의 효율면에서 애로가 크다. 현지 인력의 노동생산성은 한국 노동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은 토·일요일 휴무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구소련 당시 사회주의 하에서의 적당주의식 근무스타일을 아직 탈피하지 못하여 노동 효율이 저하된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주변국가들로부터의 외부인력 유입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부인력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시간소요 및 언어문제에 따른 장애이다. 수도(Astana)가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Almaty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업무처리 및 정보수집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소요가 많다. 관료주의 심화에 따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선 기관의 결정권한이 약한 것도 업무의 비효율을 야기한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시절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자국 언어가 널리 사용되지 못했지만 1991년 독립이후 카자흐스탄 언어 단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행정상의 복잡함을 더하고 있다.



<표 5> 한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시 애로사항

분 야	주요 내용
금 융	·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으로 현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
조 세	· 불투명한 세무규정과 세무당국의 자의적 개입 · 높은 과세부담, 비효율적인 세금감면에 따른
노 동	· 고급인력의 해외유출로 전문인력 부족 ·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노동 허가 절차로 외국주재원도 1년마다 비자를 새롭게 갱신하여야 하는 불편함
통 관	· 통관제도 미정비로 통관 지연, 부대비용 증가
인프라	· 내륙국가와 광대한 영토에 따른 물류비용 과다 · 도로, 통신 등 각종 인프라 미비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강제규정 미비
기 타	· 임금, 토지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경직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편의주의 과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투자 유치 기관은 Kaznex Invest이다. 정부 출연 기관인 Kaznex Invest는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카자흐스탄 투자 관련 정보와 애로점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 ▶ 주 소 : 2nd floor, Business-Center 'Ansar', 25 Siganak Str.,
Astana, Kazakhstan
- ▶ 전화번호 : +7-7172-79-9393
- ▶ 홈페이지 : <http://www.Kaznexinvest.kz>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로서 199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로는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외국인투자자 보호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이 있는데, 이 법은 투자시점으로부터 10년간 법령 변경이나 제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며, 수출외화수입의 본국송금 시 적용하는 환전 특혜 범위 및 기간 등도 각 건별로 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원자재 위주의 단순 수출을 지향하고 산업다각화와 첨단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1~2015년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계 및 자동차, 의약 및 바이오기술, 화학산업, 식품 가공산업, 전기·전자, 에너지 부분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외환규제와 이중내륙국가라는 공간적 장벽, 2005년 안디잔 사태⁵⁾ 이후 인권 문제 등으로 인근 카자흐스탄과 달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투자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달러 및 경화수입의 50% 강제 매각 의무화와 과대평가된 숄화환율 적용, 숄화의 태환성 비보장 등 환전과 관련한 불이익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과실송금 제한, 복잡한 무역 제도 등이 우즈베크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변동 리스크가 적은 반면, 재무와 경제적 리스크는 높은 편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일찍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5)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 동부 안디잔 지방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과격단체가 정부 전복 및 이슬람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EU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정부의 과잉 진압과 인권 탄압으로 보고 있다. 이 사태로 수백명의 시민들이 죽고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 성과만큼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투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삼성전자의 현지 생산 공장 청산과 갑을과 대우자동차의 지분 포기 과정 등에서 투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외환 및 환전상의 리스크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어려운 외환사정 때문에 여타 국가들보다 수입관세를 높여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경쟁 품목의 수입 관세는 터무니없이 높은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관계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대금 회수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투자 이익에 대한 외화 환전 및 반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결국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약속한 환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공장 철수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외환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현지화인 숨화를 달러화 등 외화로 환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통 환전 신청을 한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환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나마 환전이 되면 다행이나 환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외화를 현지화인 숨화로 환전하기도 쉽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숨화의 평가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숨화 통화량을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숨화도 부족하고 외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은 항시적인 환 차익과 평가절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제조업 투자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산업 인프라 부족과 정부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금융제도의 미비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관 산업 미발달로 부자재 조달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의 관료조직의 비효율적 업무관행이 잔존하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경찰·세무·행정관료의 지나친 간섭사례도 빈번하다. 금융제도 미비는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은행예금 잔고를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자재 구입·시설투자·인건비 등 재투자 비용만



환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 투자기업은 기업별로 매년 환전 쿼터를 배정받고 입금액중 기업 경비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환전쿼터 범위 내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쿼터에도 불구하고, 외화환전이 용이치 않아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용 외화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가동 중단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정학적 특성상 과도한 물류·운송 비용도 제조업 투자의 문제점이다.

<표 6>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

항 목	DB 2013 Rank	DB 2012 Rank
창 업	90	90
건 축 관 련 인 허 가	152	145
전 기 연 결	167	172
재 산 권 등 록	138	138
자 금 조 달	154	158
투 자 자 보 호	139	136
세 금 납 부	161	159
국 제 교 역	185	185
채 권 회 수	46	45
퇴 출	73	124

자료 : IFC(2013)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2012년 168위에서 2013년도에는 14단계 상승한 154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록 기업환경이 소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하위권순이며 인근한 카자흐스탄이 49위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의 기업환경은 그만큼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퇴출 분야에서 전년 대비 51단계나 상승한 것이



주목할 만하며 전기 연결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건축 관련 인허가, 투자자 보호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S&P, Moody'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등급을 여전히 미부여하여 국가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내의 한국인투자 보호조치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우즈베크 정부가 체결한 49건의 양자투자조약(BIT)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한국과의 투자협정은 1992년 서명되었다. BIT는 주로 투자의 정의와 범위, 투자자의 창립,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피해보상, 수용금지, 외환송금 보장, 분쟁해결 등을 규정한다. 투자자와 정부 사이에 분쟁 발생 시 분쟁은 우즈베키스탄 국내 법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행정지원제도로는 UZINFOINVEST가 있다. UZINFOINVEST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정보지원 등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다. 본 기관은 주로 우즈베크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국내외에 알리고 외국인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관련 one-stop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 파트너 간에 미팅·협상 등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 주소 : 1, Taras Shevchenko st., Tashkent, Uzbekistan
- ▶ 전화번호 : +(99871) 2389100
- ▶ 홈페이지 : <http://www.uzinfoinvest.uz/>



3.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천연가스 수출로 급성장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 체제 지속, 불투명한 재정 운영, 최하위권의 국제 신인도 등 취약점이 많아 외국인투자가 부진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개혁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혁·개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국가발전에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정제 플랜트 및 가스관 건설을 위한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기준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등록된 외국기업은 665개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합작회사는 235개이다. 전체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 수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보다는 적다. 이유는 외국인투자를 우호적인 몇몇 나라에만 개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와 외국기업의 수는 터키가 32.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이란으로 14.9%, 러시아가 10.7%, 아프가니스탄 5.5%, 미국 3.7%, 영국 3.2 % 순이며, 합작회사들은 주로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산업 개발에 6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석유 및 가스개발 분야가 가장 유력한 진출 분야일 것이다. 이중 카스피해의 해상광구 개발과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가스관 건설이 대표적인 투자 분야이다. 또한 對 중국 및 對 파키스탄 가스관(TAPI) 확충도 주목해야 할 진출 분야이다. 이로 인해 석유가스 정제와 관련 화학 산업, 플랜트 설비 등 사업다각화 분야에도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건설 분야에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이 유망하며, 투르크 호수 주변 건설 사업에는 담수화 플랜트가 필요할 것이다.



Avaza 관광특구 개발 사업도 건설 분야의 주요 진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업 및 투자환경으로 외국인 투자는 미미하다.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신인도 매우 저조하다. Fitch사는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철회하였고, 미국의 US Eximbank, 영국의 ECGD 등은 단기 채무만 인수하고 중기 인수에는 제한을 두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신인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4.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구소련 공화국 중 가장 개방적인 경제를 갖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이 1998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일찍 WTO에 가입했으면서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아시아 이웃국가들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키르기스스탄은 WTO에 부합하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었지만, 정작 자국의 수출상품은 주변국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독립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전환을 선택하였다. 가격자유화, 대외무역 자유화, 독자 통화도입 및 사유화에 있어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앞질렀고, 서구식 민법을 도입하고 최초로 토지사유화를 비준하였다. 2007년에는 국제 금 가격의 강세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호황으로 8.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주로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이며, 경작 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7%에 불과한 등 지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2003년 3월,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외국인 투자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자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법률은 투자자에게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투자 후 10년간 유효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참가 또는 주식 취득도 가능, 수입된 자본설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며, 법인세는 2006년 20%에서 10%로 인하하였다. 정부는 수력발전, 광업, 제조업, 관광, 통신·전기 인프라, 가공산업 부문에서 외자 도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4곳의 경제특별구역(Naryn, Karako, Bishkek, Maimak)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및 관세가 면제, 수출 쿼터에 대한 제한은 없다.



<표 7> 키르기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

항 목	DB 2013 Rank	DB 2012 Rank
창 업	15	16
건 축 관 련 인 허 가	67	67
전 기 연 결	177	182
재 산 권 등 록	11	16
자 금 조 달	12	9
투 자 자 보 호	13	13
세 금 납 부	168	162
국 제 교 역	174	173
채 권 회 수	47	48
퇴 출	155	153

자료 : IFC(2013)

키르기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는 2012년도와 2013년도 큰 변화가 없다. 카자흐스탄의 49위보다는 낮은 7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보다는 훨씬 양호한 기업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기 연결이다. 부족한 전기와 교통 물류의 문제로 기업 환경이 나빠지는 것과 비교하여 창업,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등 시장경제 제도 면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선진국 못지않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5.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최빈곤국인 타지키스탄은 1992년의 내란과 1994년 이후 Rahmonov 대통령의 장기 독재집권 및 파벌싸움 등 정치 불안, 인프라 부족, 빈곤, 지리적 고립으로 CIS지역 중 FDI 유입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 적용은 미흡하며 낮은 급료에 따른 부패 만연과 정치적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해외이주노동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2010년 GDP 대비 40%를 기록하였으며, 빈곤율은 53%에 달하고 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모두 국제가격에 민감한 원자재, 식량, 연료 등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을 통해 수송비용을 줄이고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교통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CAREC(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UNESCAP의 아시아 하이웨이, 범아시아철도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운송 경쟁력 확보, 지역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Rogun, Sangtuda I, II 발전소 건설 재개를 시작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국가들과 수력발전소 공동건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수력발전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표 8> 타지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

항 목	DB 2013 Rank	DB 2012 Rank
창 업	77	70
건 축 관 련 인 허 가	180	179
전 기 연 결	181	180
재 산 권 등 록	82	90
자 금 조 달	180	180
투 자 자 보 호	25	66
세 금 납 부	175	170
국 제 교 역	184	184
채 권 회 수	43	43
퇴 출	79	71

자료 : IFC(2013)

타지키스탄의 기업환경 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2012년 147위에서 2013년도에는 6단계 상승한 14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투자자 보호와 재산권 등록 분야에서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반면 창업, 퇴출 분야는 후퇴하였다. 내륙국가의 특성상 국제교역상의 불리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전기 연결도 최악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극빈국으로서 타지키스탄의 투자 환경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4월, 타지키스탄은 15년간의 협상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59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CENTRAL ASIA NATION

CENTRAL ASIA NATION

제3장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사항별 해소방안





제3장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사항별 해소방안

1. 애로사항 설문과 분석

가. 설문의 목적과 내용

뉴실크로도협의회(NSR)는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경련을 통해 9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현재,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신한은행 등 20개 기업이 이 설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각 항목은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무응답 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기업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유감스럽게도 중앙아시아 현지에만 활동하는 기업들은 여건상 조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본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 우즈베크, 투르크, 키르기스, 타지키) 진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파악, 향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니 성의껏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 내용

1. 귀사는 중앙아시아의 어느 국가에 진출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1) 우즈베키스탄, 2) 카자흐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4) 키르기스스탄,
5) 타지키스탄
2. 귀사가 진출한 업종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1) 제조업, 2) 무역업, 3) 건설·플랜트, 4) 금융업, 5) 서비스업, 5) 기타 ()
3. 중앙아시아 진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 표시, 2개 선택)
1) 내수시장, 2) 저임금/노동력, 3) 자원개발, 4) 수출기지, 5)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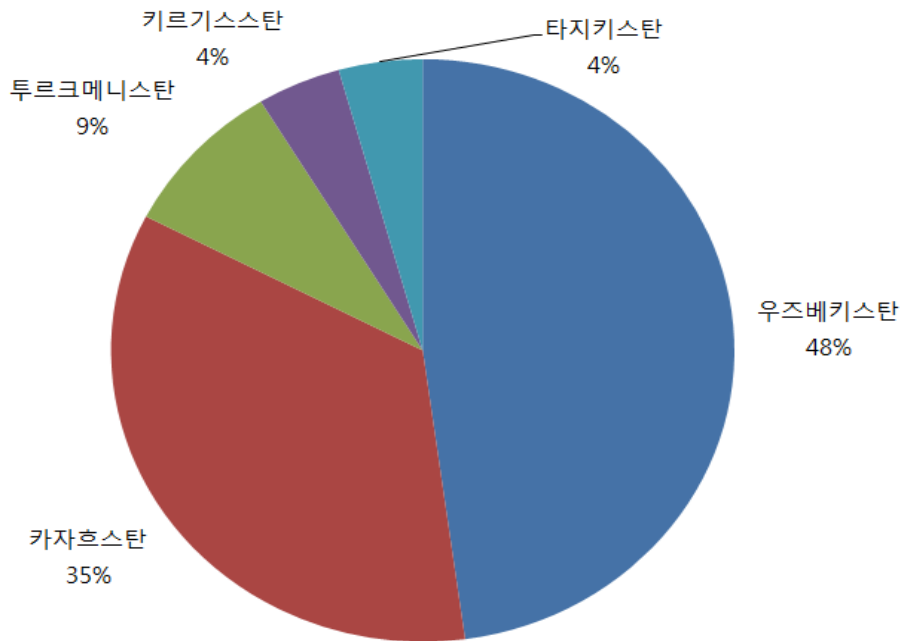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

4. 현지 법인 및 공장 신축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사항은? (우선 순위 표시, 2개 선택)
1) 투자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태도 변화, 2) 법령상의 지원규정 미흡
3) 인·허가 등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4)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
5) 현지어의 의사소통, 6) 기타 ()
5. 내수 및 조달 시장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 표시, 2개 선택)
1) 대금회수, 2) 유통 경로, 3) AS 문제, 4) 과도한 세금, 5) 행정 규제,
6) 통관, 7) 환전과 송금, 8) 기타 ()
6. 현지 경영관리 전반에서 경험하고 있는 애로요인은? (우선 순위 표시, 2개 선택)
1) 인프라 부족 2) 고용 및 인사관리 3) 원자재 및 부품 조달난
4) 자금조달, 5) 환전 및 송금, 6) 기타 ()
7.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시 애로요인은? (우선 순위 표시, 2개 선택)
1) 복잡한 절차 2) 높은 이자율 3) 담보 요구 4) 커미션 요구
5) 대출제한 규정, 6) 기타 ()
8. 현지 고용관리 애로요인은? (우선 순위 표시, 2개 선택)
1) 전문직 및 기술직 구인난, 2) 높은 이직률, 3) 노동관련 규제
4) 노사분규(노동조합), 5) 고임금, 6) 근로 태도, 7) 기타 ()
9. 인사관리상의 주요 애로요인은? (우선 순위 표시, 2개 선택)
1) 책임의식 부족, 2) 업무처리 능력 부족, 3) 연장 및 시간외 근무기피
4) 애사심·소속감 결핍, 5) 안일한 작업태도, 6) 기타 ()



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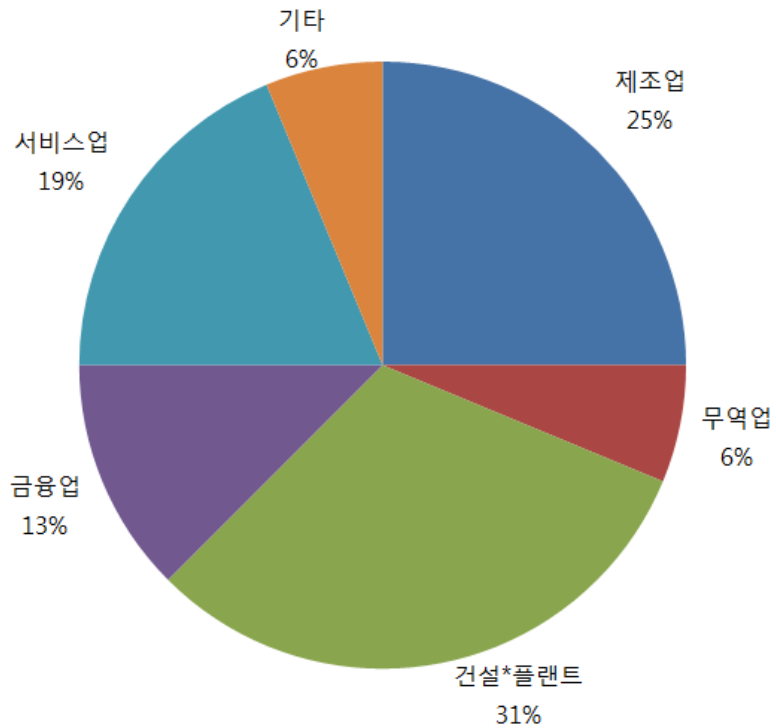
1. 귀사는 중앙아시아의 어느 국가에 진출하였습니까?



설문 결과 : 설문 답변한 기업들은 주로 우즈베키스탄(48%)과 카자흐스탄(35%)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트 프로젝트가 많은 투르크메니스탄에 한국 기업들이 자원이 없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보다 훨씬 더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을 통해 잘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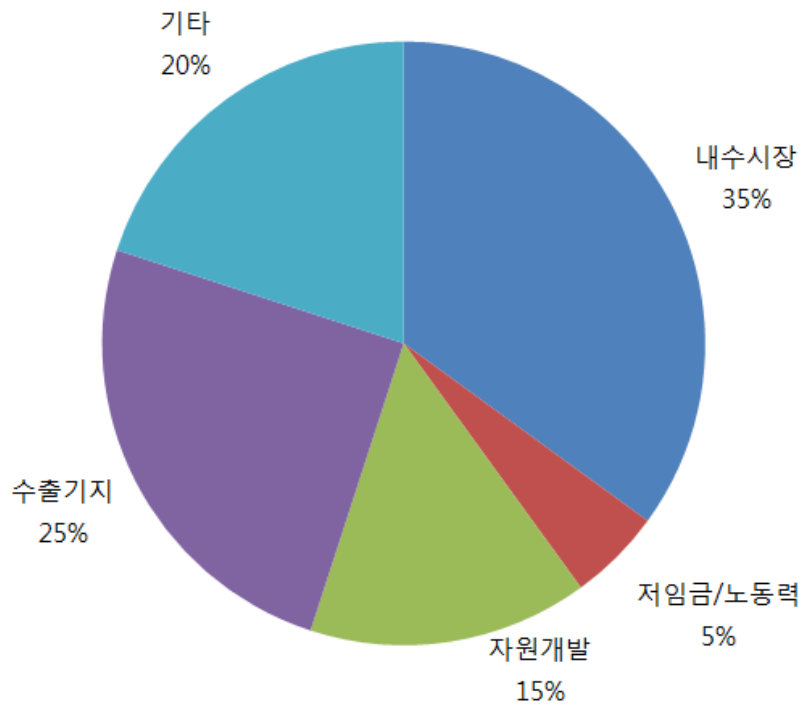
2. 귀사가 진출한 업종은 무엇입니까?



설문 결과 :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업종이 주로 건설·플랜트 (31%), 제조업(25%)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역업은 퇴조하고 서비스업과 금융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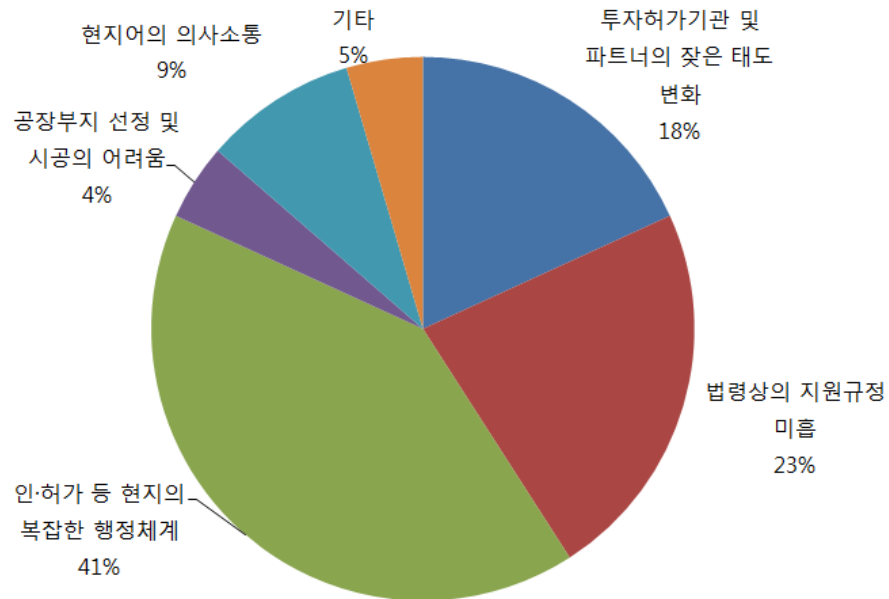
3. 중앙아시아 진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설문 결과 : 중앙아시아 진출 동기는 시장 개척(35%)이 가장 많았으며 수출기지(25%)가 다음으로 많았다, 시장 개척은 주로 카자흐스탄, 수출 기지는 우즈베키스탄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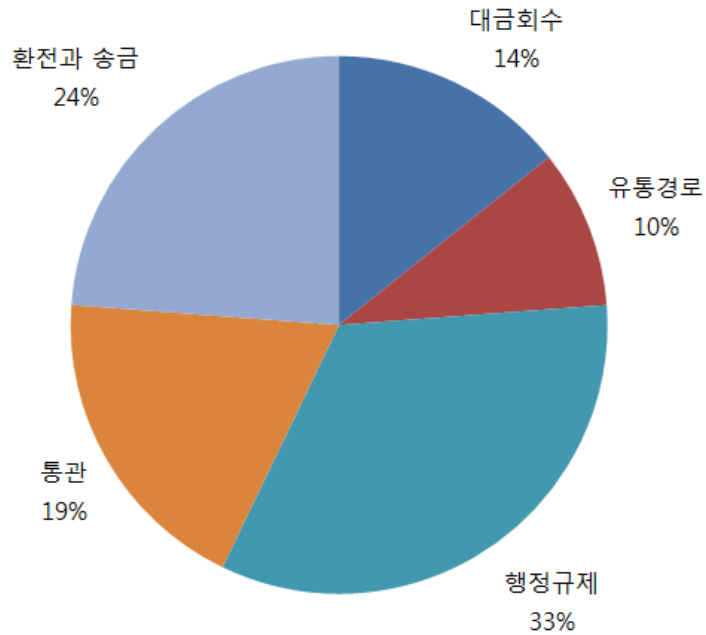
4. 현지 법인 및 공장 신축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사항은?



설문 결과 : 중앙아시아의 기업 환경을 반영하여 법인 설립 과정에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41%)가 가장 큰 애로요인이며, 법령상의 모호함과 지원 규정 미흡(23%)도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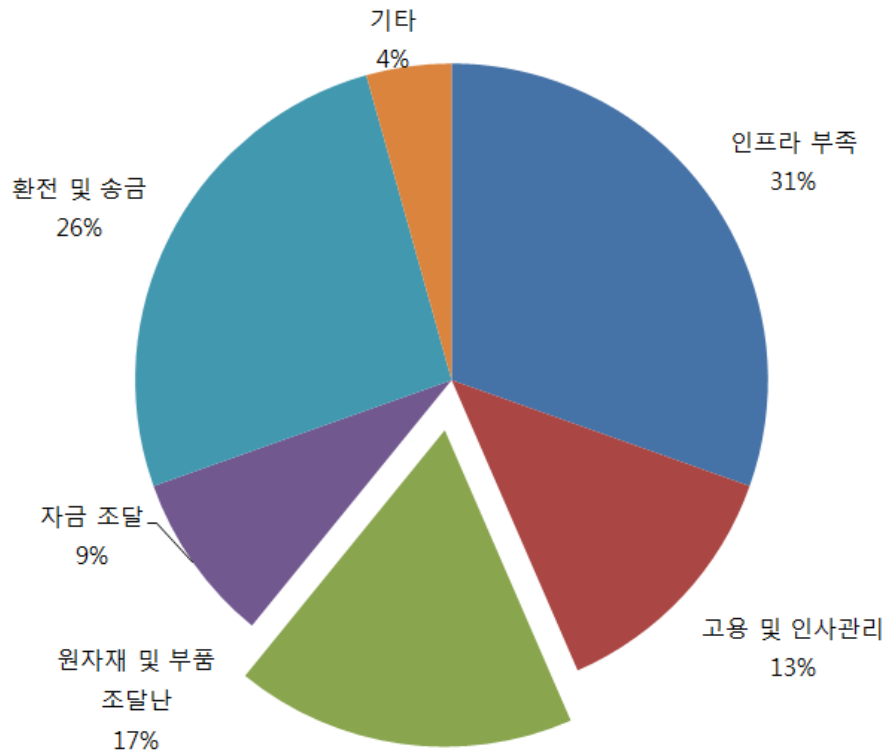
5. 내수 및 조달 시장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설문 결과 : 행정규제(33%)와 통관(19%)은 중앙아시아 전반의 애로요인이며, 환전과 송금(24%)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의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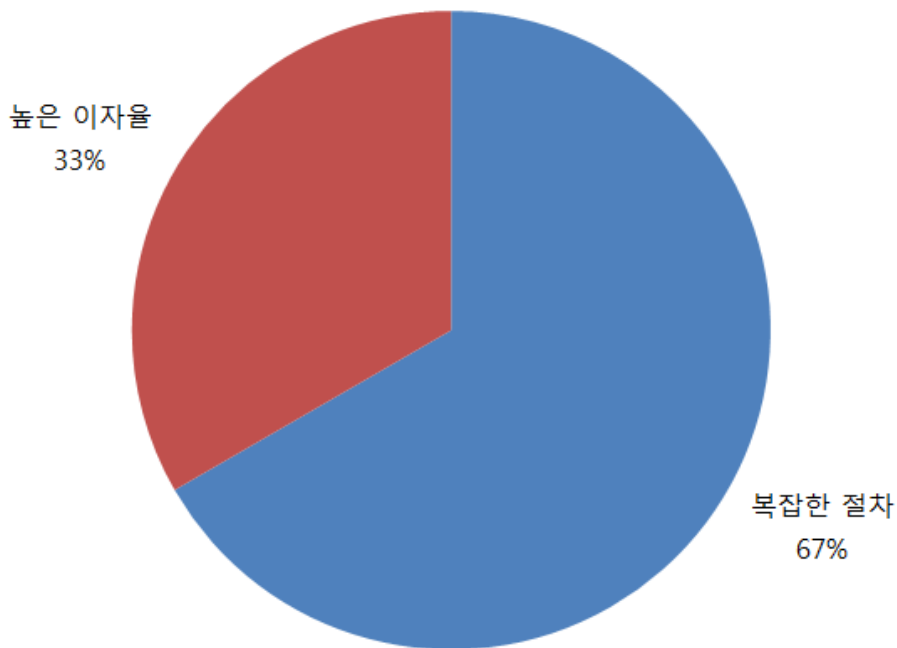
6. 현지 경영관리 전반에서 경험하고 있는 애로요인은?



설문 결과 :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하여 인프라 부족(31%)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며, 내륙국가의 특징인 원자재 조달(17%)도 애로요인이다. 환전과 송금(24%)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의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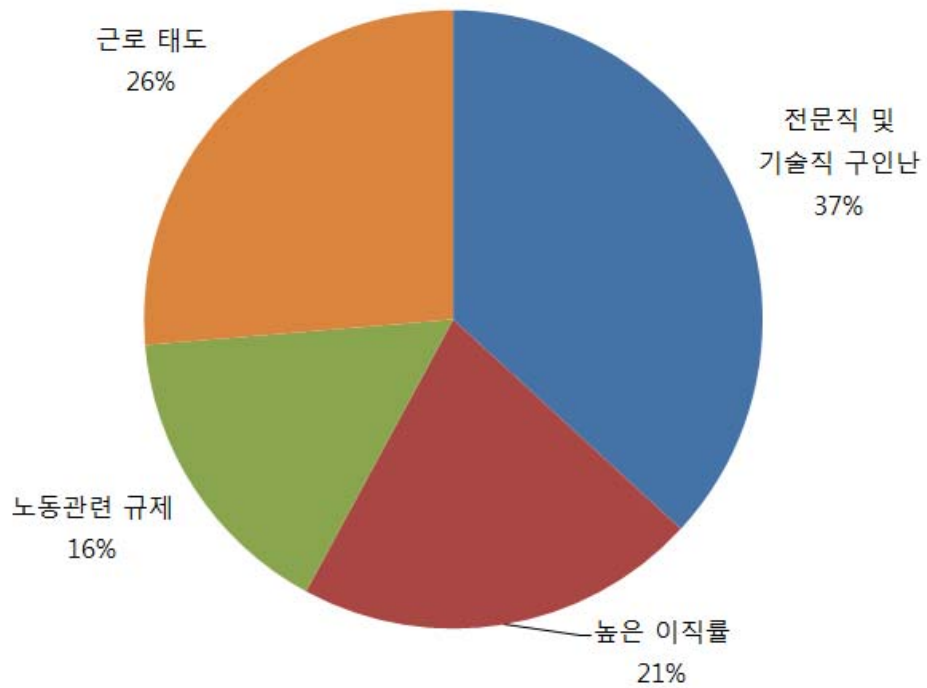
7.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시 애로요인은?



설문 결과 : 중앙아시아의 복잡한 규제와 절차(67%)가 금융상의 애로요인이며 높은 이자율도 기업 경영에 애로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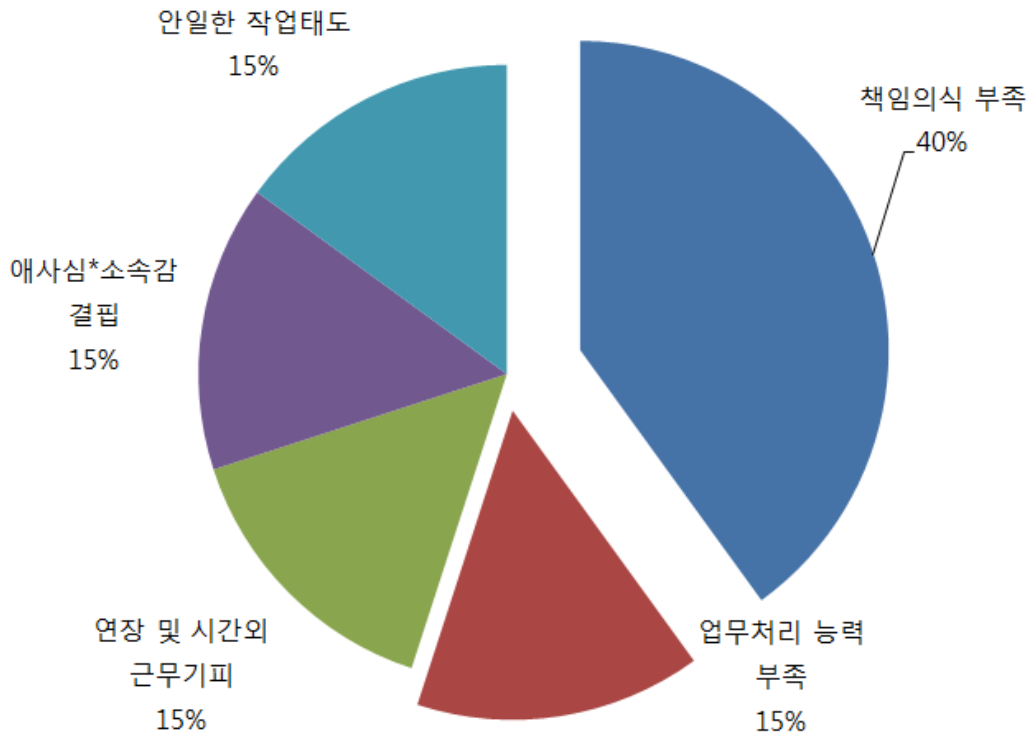
8. 현지 고용관리 애로요인은?



설문 결과 : 현지 고용관리 애로요인은 고급전문인력의 러시아와 중동으로의 탈출 때문에 전문직 구인난(37%)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한국과 다른 근로태도(26%), 높은 이직율(21%)을 꼽을 수 있다.



9. 인사관리상의 주요 애로요인은?



설문 결과 :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중앙아시아인들의 의식구조를 반영하여 책임의식 부족(40%)이 인사관리의 애로요인이며, 소속감 결핍, 연장 근로 기피, 업무처리능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주요 애로사항 해소방안

가.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현지비자 발급 장기소요 및 절차 복잡(A사)

【애로사항】

저의 회사는 카자흐스탄 진출 초기부터 비자 문제로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회사 업무의 특성상 한국의 관련 기업들을 자주 초청하고 현지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카자흐스탄의 까다로운 비자 규정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비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안과 정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카자흐스탄 진출 A기업).



【대처방안】 6)

카자흐스탄 비자에는 개인초청비자부터 노동, 관광, 상용, 입국비자 등의 많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비자는 카자흐스탄 외무부가 발급하는 초청장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들 중, 2013년 상반기까지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기업들이 가장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관광비자 및 상용비자, 입국비자가 있었습니다. 비자발급규정의 변경이전까지는 비교적 쉽게 입국비자, 상용비자 초청장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출장인원들이 입국비자(알마티 국제공항취득), 상용비자를 통하여 카자흐스탄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표 9> 비자규정변경 이전의 주요 상용비자 카테고리

비자종류	방문목적	입국가능횟수	비자유효기간	체류가능일
ICB-90	사업 관련 (임의 작성)	1회, 2회, 3회	최대 90일	최대 90일
ICB-120	사업 관련 (임의 작성)	복수	최대 1년	최대 120일

비자규정 변경 이전까지는 대행사를 통하여 입국, 상용비자 초청장을 발급 받을 경우, 입국비자 초청장 발급 기간은 최단 1일,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간은 최단 3일 이었습니다. 초청장 발급이 까다롭기는 하였으나 발급기간 지연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용비자 ICB-120은 공식적인 체류 기한이 120일로 한정되지만, 거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비자 유효 기간인 1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6) 배정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독일 뮌헨대 정치학 박사(러시아CIS지역학 전공), 사시 50회 출신으로 지금은 카자흐스탄 현지 Law Firm AK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mail : mirahanj@gmail.com



<표 10> 비자규정변경 이후의 주요 상용비자 카테고리

비자종류	방문목적	입국가능횟수	비자유효기간	체류가능일
D1	전시회 및 회의 참가	1회, 2회, 3회	최대 90일	입국마다 최대 30일
D2	단기출장	복수	최대 1년	180일간 최대 60일
D3	협상, 컨설팅, 계약체결	복수	최대 3년	180일간 최대 60일, 단, 연속 30일 이상 체류 금지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초청장 발급 시의 공공연한 부정행위 및 상용비자 소지자의 장기 체류를 막기 위하여 대대적인 비자규정 개편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자규정 변경 전후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1> 비자규정변경 전후 주요사항 비교

주요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초청장 발급	최단 3일	접수 후 일주일
입국시점	비자발급 당일	접수 완료 후, 14일 뒤
체류기간	최대 1년 가능	최단 30일, 최대 60일
초청장 수수료 납부	대행사 현금납부	법인 혹은 지점명의로 반드시 은행송금
서류준비	대행사 임의 작성가능	사업관련 계약서 혹은 법인, 지점 명의의 별도 요청서 첨부
입국비자	가능	대사관이 개설된 국가의 국민은 입국비자발급 불가



비자규정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청장 신청 시점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변경 전까지는 접수 후, 최단 3일 이내에 입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접수 후 14일 이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초청장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방문 예정일로부터 21일 이전에 초청장을 미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상 입국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서류준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지 업체와의 계약서, 출장확인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장 수수료는 반드시 초청기관(법인 혹은 지점)이 은행 송금하여야 하며, 초청장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중의 하나로 송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상용비자 소지자의 장기체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의 상용비자로는 최대 연속 60일 이상을 체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늘어날 경우, 비자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입국비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비자규정변경 이후, 대사관이 개설된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비자 발급을 불허하고 있어 기존처럼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차원에서 초청장 발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청장 및 비자 발급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언급되는 사안이기도 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무비자 협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출장 등을 위한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다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진출 초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카자흐스탄 Engineering 설계용역에 대한 현지 과세(B사)

【애로사항】

저희 회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설계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부터 Engineering을 반드시 카자흐 지사 또는 법인이 수행토록 변경하였으며, 이는 Engineering에 대해서도 과세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중과세 방지 과세협정에 한국에서 세액 공제보다는 현지에서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한국 납부 예상 세액을 넘는 금액은 세액 공제 불가능하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우려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카자흐스탄 진출 B업체).

【대처방안】 7)

카자흐스탄은 특정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라이선스’ 제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의 quality를 통제하고 라이선스 획득 사업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자하는 정책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라이선스 없이 수행한 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없이 실행한 거래는 취소되고 업체 청산 사유마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라이선스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대분류 및 그 산하 세부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 등 라이선스 획득이 요구되는 업무가 다양하고, 각 라이선스별로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각기 다를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가 번거롭고, 요구조건도 까다로워 실무상 라이선스 획득에 어려움이

7) 심재길 회계사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이며 KPMG 카자흐스탄 알마티 오피스 Korea Desk 담당이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함께하는 한국 공인회계사를 꿈꾼다. e-mail : Jaegilsim@kpmg.kz



많은 실정입니다. 하여, 라이선스 제도를 통하여 카자흐스탄 기업실무상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주된 산업인 Oil and Gas industry는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최근 필자는 카자흐스탄 내 한 유전의 생산 용량을 높이기 위해 발주된 설비제작 및 공급 프로젝트의 수행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세종류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두 종류의 라이선스는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license 및 design license로서 업무 범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고, 나머지 한 종류는 Ministry of Oil and Gas로부터 받아야 할 industrial license로서 oil and gas industry 관련 설비의 design, fabrication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획득하여야 할 라이선스였습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라이선스와 산업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라이선스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라이선스의 주무관청이 상이하여 총 세개의 라이선스 모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상 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의미합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construction license는 3단계의 category로 구분되는데, 각 category별로 수행할 수 있는 construction의 업무 영역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내에서 한국기업들이 수행할 만한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Category 1 또는 2에 해당하는 construction license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Category 1 또는 2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5년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기업이 자회사 또는 JV형태로 카자흐스탄 건설시장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 또는 JV가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10년 또는 5년 이상의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카자흐스탄 라이선스 법령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으로 인해 진출구조를 결정할 시 제약요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점의 형태로 진출할 것이 강요된다 할 것입니다. 한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시 요구되는 요건 중 하나가 현지업체를 partner로 하여 JV형태로 진출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한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에 해당할 것입니다.

까다로운 요구조건의 또 다른 사례로는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서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Engineering 분야의 경우에도 디자인 업무는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카자흐스탄의 화학 Plant건설 EPC사업자로 선정된 한국 건설업체는 Engineering 업무가 실제로 모두 카자흐스탄 외 국가에서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이 라이선스 있는 자에 의하여 카자흐스탄 정부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는 사유로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Engineering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문제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라이선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지점 설치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에서 지점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Engineering업체는 디자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관련 원가를 차감한 이익에 대해 카자흐스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 조세 관점에서 문제시 되는 이유는 한국과 카자흐스탄간에 체결된 조세 조약에 따라 Engineering 업체가 디자인 업무로부터 영위하는 소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카자흐스탄 내에 설치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나, 라이선스 문제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점을 설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지국이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바뀐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한국과의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하여, 지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외에 5%의 지점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한국기업의 지점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생한 총 이익에 대해 24%의 세액(법인세 20%, 지점세 4%)을 납부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도 전액(이익의 20%)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신청이 불가능한 비용이 발생하여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디자인 라이선스가 야기하는 문제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라이선스 제도가 한국기업의 진출 및 기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따른 대책 역시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카자흐스탄 진출을 위하여 라이선스 이슈를 가진 기업차원에서는 i) 라이선스 발급대상 업무의 중복 문제는 여러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한 산업들간에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 카자흐스탄 정부에 공식적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중복될 수 있는 영역간에는 라이선스 획득 면제를 유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i) 라이선스 발급요건에 대한 규정은 한국업체 등 외국기업이 라이선스를 획득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으므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사례 3)의 경우에는 Engineering업체는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라이선스를 보유한 현지 업체와 Agency계약을 맺고, 대정부 제출 및 확인 등의 디자인 관련 카자흐스탄 내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그 예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 진출예정 또는 진출한 기업을 위하여 한국정부차원에서는 i)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아틸라우 폴리에틸렌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한 카자흐스탄 현지 업체들에 의하여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이상, 라이선스 획득 절차 및 요건 간소화 또는 면제적용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라이선스 발급요건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신규법인의 건설 라이선스 취득불가는 외국법인의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규법인이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개발해 달라는 것을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사업장을 요구하는 디자인 라이선스와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법령에 따라 과세권이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변경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한국과 카자흐스탄 과세당국 모두와도 논의를 거쳐 사업장 요구 조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카자흐스탄 노동허가 및 쿼터 문제(C사)

【애로사항】

저의 회사는 건설 인프라 관련 카자흐스탄을 진출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협력업체와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장단기간 현지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 노동력 사용을 강제하면서 노동허가증을 받기가 까다롭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대 대처방안과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카자흐스탄 진출 C업체).

【대처방안】 8)

비단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자원부국들에서 나타나는 자원민족주의 현상으로 인하여 에너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외국인 노동허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노동허가발급과 관련하여 규정변경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외국인 노동허가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의무조건 이행 및 현지인, 카자흐스탄인 인원 비율과 관련하여 잦은 검열을 진행하며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노동허가취득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8) 배정한 변호사. 이력은 앞 장 참조.



<표 12> 노동허가 카테고리 별 자격 요건

구분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직책	대표, 부대표	카테고리 3의 상위 관리자 직책	전문직, 기술직, 사무/관리직	경력 노무직
학력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졸 혹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경력	동일 직책 5년 이상	동일 직책 5년 이상	동일 직책 3년 이상	동일 직책 3년 이상
연장여부	1년 1회 연장가능	1년 1회 연장가능	1년 1회 연장가능	1년 1회 연장가능
기타	지점, 대표사무소장의 경우 취업허가가 필요 없음		동일 직책도 경력에 따라 카테고리 2, 3으로 나뉠 수 있음	실제로 허가취득에 어려움이 따름

<표 13> 취업허가 발급절차

1단계 협의 및 구인	2단계 서류접수	3단계 심의
▶ 외국인 취업허가 쿼터 및 직책 등에 대하여 관할 기관 실무자와 사전 협의 ▶ 사전 협의된 직책에 대한 구인신청서 관할 기관 제출 ▶ 관할 기관은 구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동안 카작 고용시장 내에서 구직자 확인. 구직자가 없을 경우 신청인의 접수 허가.	▶ 준비 서류(별첨 참조) ①신청서 1. 회사소개서 2. 회사 설립서류 사본 3. 특수조건 수행에 관한 보고서 4. 외국인 및 현지인 비율 보고서 5. 특수조건 동의서 6. 여권번역공증 및 영사 확인본 7.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및 영사 확인 본	▶ 관할 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취업 허가 심의 위원 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허가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 관할 기관은 준비서류 미비 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허가서 발급 불가를 통보해야 함.
4단계 통지	5단계 예치금	6단계 허가서 발급
▶ 관할기관은 취업허가 발급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전자 혹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 신청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외국인 허가 종료 시 출국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은행예치확인서와 신청인과 은행간 예치금 계약 서사본을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할기관은 은행 예치금 확인서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허가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함.



카자흐스탄의 노동허가는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카테고리 구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자 하는 직책에 따라 이뤄지며,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허가 취득에는 통상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며, 최초 취득 후 1년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카테고리는 1년의 기간이 지난 뒤, 반드시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노동허가와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이 연장시점에 발생합니다. 연장시점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허가에 대한 의무조건 이행여부입니다. 통상 1년 기간의 외국인 노동허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1명당 1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건이 발생합니다. 총 4가지의 의무조건 사항이 있으나, 대부분은 현지인 1명 추가 고용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시점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매년 인원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매년 한국인 채용인원만큼의 현지인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의무조건 이행은 대부분의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지인 고용 비율입니다. 기업규모가 소기업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나 중기업 이상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외국인 인원에 따라 카테고리 1, 2 직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현지인 비율이 3:7, 카테고리 3, 4 직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현지인 비율이 1:9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정시점에 인원비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검열을 받는 시점에 인원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 본 고용 비율은 몇몇 대규모 건설 현장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관행적 수수료 지급에 따른 문제발생입니다. 대부분의 노동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1~2년의 기간 뒤에 의무조건 이행 및 고용 비율 유지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검열을 받게 됩니다. 검열 이후 위의 두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의 업체는 노동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관행적인



수수료를 노동부 담당자에 지급합니다. 관행적 수수료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00~20,000달러 사이의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행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수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의무조건 등의 결과물 제출을 매년 관행적 수수료를 지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마티 A법인의 경우, 노동부 검열을 받으며 지적된 의무조건 미이행 및 현지인 고용비율에 따른 사후조치를 관행적 수수료로 2010~2013년 기간 동안 해결을 해오다 최종적으로 2013년에 모든 인원의 노동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 수수료가 의무조건 미이행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허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노동허가 취득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취득한 허가에 대한 의무조건 이행사항 및 기업규모를 정확히 알고 연장시점에 미리 서류를 준비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많은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허가발급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기업규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소규모 단위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접근보다는 CAREC(중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외부지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인원비율 문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카자흐스탄 통관서류 작성 및 절차 간소화(D사)

【애로사항】

저희 업체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통관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 러시아어 번역본, 제품 사진, 선적지 수출통관 서류 등이 복잡하고 통관관련 서류를 장기보관(5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화물검사(Inspection) 대상감축, 검사담당 세관직원 증원을 통해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카자흐스탄 진출 E기업).

【대처방안】⁹⁾

카자흐스탄의 물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기에 각 나라를 경유할 때마다 T/S 면장 발급절차, 랜덤 인스펙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철도 운송부분에서 카자흐스탄과 중국과의 선로 사이즈 문제로 환적을 해야 하고 동절기에 날씨문제로 lead time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정체구간이었던 ‘우루무치(Urumqi)~징헤(Jinghe)~알란산코우(Alashankou)~도스틱(Dostyk)~알마티(Almaty)’ 구간외에 추가 구간이 신설되어 정체현상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환적문제, 통관문제로 이동경로의 복잡성과 세관 창고내 보관이 늘어나면 분실로 이어지는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자면장을 포함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B/L 건당 인력이 필요하고 통관 창구마다 세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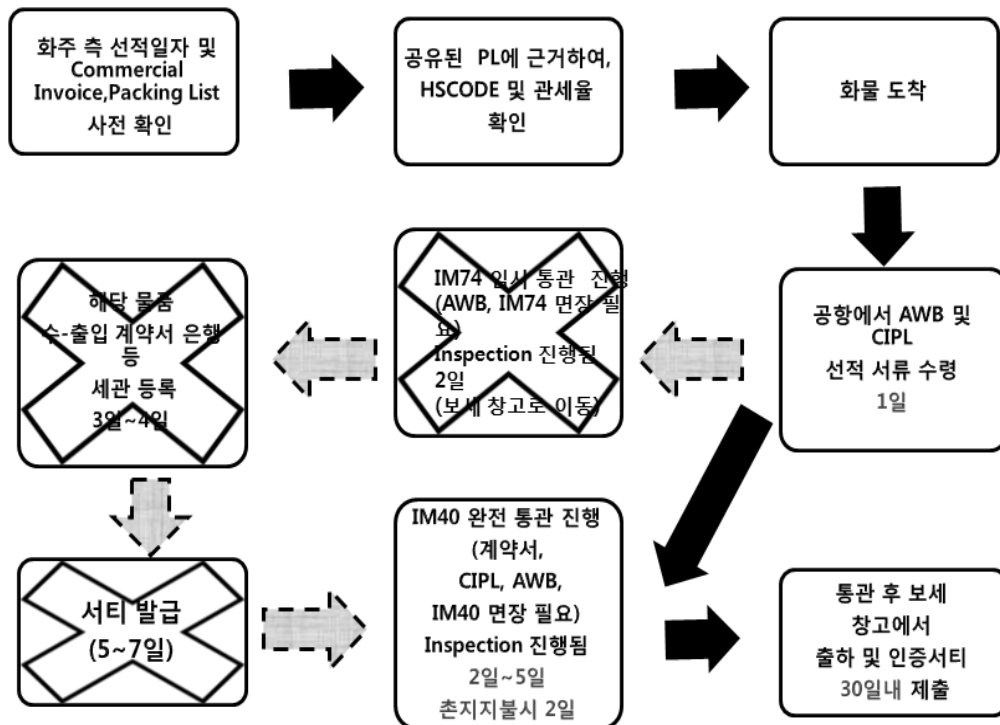
9) 김익준 에코비스 대표는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 석사(MBA),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했으며 93년부터 러시아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에 법인 운영 중이며 해당지역에서 물류와 유통을 결합하여 한국의 기업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mail : kimij@ecovoice.co.kr



접촉해야 합니다. 해당문제로 EDI가 구축된 한국과 달리 통관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마다 세관원을 접촉해야 하기에 먼저 통관하기 위해, 또는 사소한 실수가 발견되면 존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존지가 지속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세관에선 존지가 지불되지 않는 업체의 화물을 평균 5일 이상 후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세관원들 자체가 EDI 구축을 꺼려합니다.

EDI는 현재 CIS국가 가운데서 러시아 모스크바 세관에서만 진행되지만 여전히 수출입자와 세관과의 전자서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수출입업자와 세관원과의 대면접촉에 의한 통관 방법으로 세관 내 존지가 발생합니다.

[그림 4] 카자흐스탄 통관절차



주 : X는 최근 통관 절차 변경으로 과거처럼 반드시 거치지 않고 간편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통관시 필요한 증명서(certification)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하나 해당 발급기관에서 당일 발행을 받을 수 있는 신청서로 대신하여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는 해당 증명서 신청만으로는 통관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명서 발급 기간이 일반적인 아이템이 대략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빠른 통관이 어려워지고 도착 후 20일 넘게 창고료 발생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세관 측으로부터 우선 선통관 및 화물 픽업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면장에 간이 수입 인증 도장으로 대체했고 30일 이내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다시 완전 수입통관 도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 수입기간과 완전 수입기간 사이에는 제품의 사용과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카자흐스탄으로 한국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매출 원가중 현지 통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지로 수출시, 국제운송료는 운송업체에서 가격을 받고 진행하면 국제운송비는 고정비가 될 수 있지만 도착지 발생비용의 경우 현지 상황과 통관업체에 따라서 고정된 비용을 예측할 수 없어 변동비로 간주하고 있고 운송의뢰 전에 통관부분까지 체크 후 운송을 진행해야 현지 발생비용도 변동비에서 고정비성으로 매출 원가를 고정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CIS 국가로 수출시 에는 현지 도착까지 체크가 가능한 물류업체를 선정하여 운송에 있어서의 완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사전 체크 없이 국제운송만 진행했다간 통관이 안 되어 물류비 증가와 지연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카자흐스탄 육가공품 통관문제(E사)

【애로사항】

저의 업체는 카자흐스탄 현지에 육가공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지의 검역과 통관이 너무 까다로워 수출을 포기할 지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가요?

【대처방안】 10)

CIS 대부분의 국가들은 육가공 제품을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IS 국가 정부들은 생활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국민의 주식으로 취급되는 제품에 대해선, 수입 제품이라도, 타 공산품, 기호품과 달리, 수입 관세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육가공 제품은 소시지, 훈제 소시지, 훈제 햄, 반건조 햄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며, 식료품 코너에서 생육 제품 보다 더 넓은 매장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수요가 높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일반 다른 상품 아이템과는 다르게 통관 시간에 따라 제품의 변질 등을 고려하여 통관 전 픽업가능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고는 있으나, 통관전 픽업 가능을 위한 사전 준비가 복잡하고 허가서와 서티관련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공 제품의 경우 제 1순위 수입 통관 제품으로, 주말 연휴 상관없이 도착 후 세관 냉동 창고로 이전되며, 화물 도착전과 수입 통관 특성인 수입 화물 도착 후 인증서 발급 절차를 선행 후 통관 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수입자 발급)

－ 제품 위생서티 (수도 아스타나 위생청 발급)

10) 김익준 ECOVICE 대표. 이력은 앞 장 참조.



- 팩킹 자재에 대한 위생서티 (수도 아스타나 위생청 발급)
- 수의학 허가서
- 방사 & 방역 & 향균 허가서(통관세관에서 바로 발행)
- 수입 회사의 육가공 식품 판매 허가서

서티 종류 (수출자 제공)

- 수출자 측 위생서티
- 수출자 측 수의학 허가서
- 생산 공장으로부터의 인체에 해가 없다는 증빙 서류

카자흐스탄 통관 법률 상, 육류, 육가공제품, 유가공 제품은 반드시 100% 실험화물 검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소시지 육가공류의 경우, 관세 5~30% 또는 0.2유로/KG~0.79유로/KG, 부가세 12%입니다.

서류 통관 완료전 선평업을 위한 조치로 중앙 세관으로부터 선평업 허가서를 발급받아 지역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제품 라벨상에 꼭 현지수입자 측 언어로 인보이스 넘버 & 첨가물 표기 & 생산 연도날짜 및 보관가능한 날짜와 생산공장으로 부터의 인체에 해가 없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과 알마티 공항은 육가공 제품을 위한 냉동 및 냉장 보관 창고를 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창고 보관을 위한 특별 계약서를 공항 조업사와 미리 체결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및 육로 운송의 경우 냉동 및 냉장 시설이 있는 보세창고(CBX)를 미리 선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알마티 공항 조업료는 육가공제품 관련의 경우 \$0.08/KG이며 알마티 공항 창고료의 경우 육가공 제품은 \$0.16/KG/DAY입니다.



▣ 카자흐스탄 운송기간 지연 문제(F사)

【애로사항】

저희 업체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물건이 제 날짜에 도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운송시 운송 지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자흐스탄 진출 E기업).

【대처방안】 11)

카자흐스탄에 물류를 제공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운송과 통관이 분리되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선 대부분 정식통관에 의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은 아직 비정식 통관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과거 카자흐스탄으로 진행되는 route는 중국철도(TCR)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TSR를 병행하여 진행되고 TCR 또한 고질적인 정체구간이었던 우루무치(Urumqi)~ 징헤(Jinghe)~ 알란산코우(Alashankou)~ 도스틱(Dostyk)~ 알마티(Almaty) 구간외에 추가 구간이 신설되어 정체현상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다만 국제운송이란 해당 지역에서 통관까지 완료되어야 수입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비정식으로 진행하는 업체에선 통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운송지연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표현됩니다. 비정식운송, 통관은 수출자, 수입자입장에선 통관에 관여를 안하여 부담없는 운송서비스로 판단하겠지만 통관후 관세 완납증명서등이 제대로 작성이 안되어 현지에서 수입 근거로 내세울 수 없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해선 안되는

11) 김익준 ECOVICE 대표. 이력은 앞 장 참조.



루트입니다. 정식 운송 통관을 진행하는 물류업체도 가능한 운송과 통관을 함께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도착지에서 최종 운송과 통관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들의 금융상의 애로사항(G사)

【애로사항】

저희 업체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로 현지 진출에 큰 문제없이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금융권 이용이 너무 까다롭고 대출의 경우 큰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카자흐스탄 진출 업체).

【대처방안】 12)

카자흐스탄 금융업은 은행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매우 높은 NPL(부실채권)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부실화는 전체적인 금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러한 신뢰의 문제는 여전히 회복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의 하드웨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 금융서비스에 익숙한 기업과 개인에게는 여전히 울화통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는 공무원이 민원인 다루는 듯한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2) 윤영호 대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하고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소재 Seven Rivers Partners 대표로 금융 및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mail : y.youn.yuri@gmail.com



▶ 은행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INN이라는 납세자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 번호와 신분증, 또는 회사 창립 서류를 가지고 가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창구직원의 빠른 손놀림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고객이 간 후에 바로 다음 고객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찍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면 안 됩니다. 웬지 모르겠지만, 창구 직원은 혼자가 된 후에도 한 참 후에야 다음 번호를 호출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담 직원이 있고, 전담 직원과 사전에 잘 연락을 하고 가면, 기다리는 수고는 덜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면에서 어느 은행을 선택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은행으로는 HALYK, KKB, BTA, ATF, BCC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체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할 때는 사업 파트너나 진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은행을 거래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권유는 반드시 무시하고 되도록이면 크고 믿을만한 은행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기업과 한국인 입장에서 믿을만한 은행은 국민은행이 41% 대주주로 있고, 국민은행 직원이 20명 가까이 파견되어 있는 BCC가 있습니다. BCC는 코리안 데스크가 있어, 한국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큰 은행은 아니지만, 신한은행의 현지 법인인 카자흐스탄 신한은행도 있습니다.

은행 거래를 하다 느끼는 불편함은 처리 속도가 늦다는 점 이외에도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너무 높은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은 카자흐스탄 신한은행을 이용하면 됩니다. 은행 예금시 텡게화 예금과 달러화 예금이 있는데 텡게화 예금은 7~9%, 달러화 예금은 3~4% 정도입니다. 정기 예금이 아닌 일반 계좌는 이용할 때 수수료는 엄청 내지만, 이자는 전혀 붙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되어 온 돈을 찾을 때는 ‘깍’ 소리가 나는 인출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출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은행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웬만해서는 협의도 잘 안 이뤄집니다. 그런 인출 수수료로 혈압이 안 올라가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은 신용 대출이 거의 없고, 담보 대출만 있습니다. 과거에 담보에 대한 과대평가가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담보력에 대한 평가도 매우 박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담보 대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담보 대출의 금리 또한 10~12%대로 매우 높기 때문에 매력도 매우 떨어집니다.

환전시에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다른 나라보다 큰 편은 아닙니다. 달러화 스프레드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매우 좁으며, 유로화, 루블화 등도 쉽게 어디서나 환전이 가능합니다. 큰 은행일수록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작은 은행이나 전문 환전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환전업체들도 아주 믿을만하고, 업무처리는 오히려 그들이 은행보다 더 경쟁력 있습니다.

해외송금은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투자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데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돈은 버는 것이 걱정이지, 송금하는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신한은행을 이용할 경우 한국으로의 송금도 매우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 증 권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업은 발전이 매우 더디고 영세하다. 증권업 발전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증권 거래소가 있으며, 증권 거래의 시스템은 한국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결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주식 종목은 10개 남짓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국영기업을 공모주 형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배정하여 증권업 자체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많이 비효율적이어서, 투자 이익을 노려볼만한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동성이 크지 않아서, 큰 자금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기업들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해외 주식 중개를 하는 증권사를 거래할 경우에 카자흐스탄 주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 가스 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 카자흐스탄 석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카즈트란스오일, 카자흐스탄 최대 동 생산 회사인 카작무스, 카자흐스탄 최대 철광석, 알루미늄 회사인 ENRC 등이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증권거래시에 세금은 없으며, 증권사 수수료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증권 보유시에 증권 예탁원에 지불해야 하는 보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트레이더를 위해서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이지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 적고, 유동성이 적으니 그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보 험

이곳 사람들은 보험을 잘 모릅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도 가짜 서류만 작성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빠르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차를 사서 첫째 보험을 들면, 보험금이 600만원 이상도 나옵니다. 일 년을 무사히 타고 나면, 살짝 고민이 됩니다. 보험을 연장하자니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연장하지 않자니 리스크가 큰 것 같고 말입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면 생각해 볼 일인데, 거의 연락 안 옵니다. 일년에 600만원 보험금 내는 고객이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전화로 연장 요청을 안 한 보험사라고 한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큰 자산을 보험에 들 경우에 되도록 큰 보험사를 선택해야 하고, 그들의 재보험 가입 여부도 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나.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외화 환전 문제(H사)

【애로사항】

저희 회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출 초기부터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 투자 자금 송금은 물론 원자재 수입용 외환의 환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가동 중단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전의 경우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예측이 되지 않아 가장 큰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요? (우즈베키스탄 진출 A업체)



【대처방안】 13)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6년부터 만성적으로 부족한 외환 때문에 IMF 등 서방의 거듭되는 외환자유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환통제의 핵심은 현지화의 경화로의 환전 제한입니다.

환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이 따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또한 외환 부족 및 이에 따른 환전 제한이 대외경제 협력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지만 아직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200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숄화의 완전 태환(兌換) 보장을 전제로 하는 IMF 8조를 수락하고 장외시장에서의 외환매입규제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외환거래 금지품목 해제, 개인의 은행에서의 소규모 외화매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후속 실행조치를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환전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즈베키스탄의 외환 수입은 원면, 금, 가스 수출과 우즈벡 노동자의 국외 송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화 수입이 증가하면 태환(兌換) 스케줄링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만 1998년, 2009년처럼 금융위기가 닥치면 환전 스케줄링이 늦어지거나 밀리게 됩니다. 실제로 1998년~2000년에는 대우자동차를 제외하고 제대로 환전을 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대우자동차조차도 환전 스케줄에 따라 적시에 환전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상 채권으로 남아 있다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방문시 부채 탕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외환 사정이 호전되면서 환전 스케줄링은 다소 늦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3) 윤성학(고려대 러시아CIS 연구소 교수). 윤성학 교수는 고려대 노어노문학과와 연세대 정치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대우경제연구소, UZDAEWOO BANK,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경제를 집중연구하였다. e-mail : dima7@korea.ac.kr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외적인 비난을 들어가며 시장경제의 기본인 환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1990년대 중반 부족한 외환보유고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환 관리는 우즈베키스탄의 핵심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되었고 외환 지출(특히 환전)과 관련하여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철저한 외환관리 덕분에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인근 러시아, 카자흐스탄처럼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MF와 서방의 계속되는 외환자유화 요구에 대해서도 우즈베키스탄 모델의 특수성과 장점을 주장하면서 외환 등 경제 분야에 국가 통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외환관리 제도는 ‘외환중앙집중관리제’인데, 특히 무역과 관련하여 수출업체는 외환 수입의 50%를 정부에 의무 매각하여야 하며 환전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특별위원회를 거쳐 집행됩니다. 보통 이 과정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전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여유를 잡아야 합니다. 환전할 수 있는 권리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기업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수출기업과, 수입대체 기업, 일반 제조업체와 무역회사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표 14> 주요 환전 대상 기업

구 분	외화 환전 소요 기간	세부 상품
외국인투자 생산기업(PEWFI)	즉시 늦어도 1개월	자동차 부품, 기계 장비 등
수출기업 및 수입대체기업	6~12개월	기계 장비, 원료 등
일반 제조업	1년~1.6년	기계 장비, 원료 등
수입 무역업체	1~2년	식료품, 공산품 등

주 : PEWFI는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GM이 대표적인.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통화신용정책위원회’ 및 중앙은행에 의해 경화소지 면허를 받는 경우와 환전권을 받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환전 면허 신청은 ‘국가 통화신용정책 위원회’(Republic Commission on Monetary-Credit Policy)의 특수 업무 팀에 의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데, 이 위원회의 임원은 은행, 재정 분야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대표자들도 참가합니다. 이 위원회는 일주일 이내에 면허 신청을 검토하며 가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환전결정은 현재 국가 전체의 경화 보유량, 국가의 경화 필요 예상량, 그리고 각각의 환전 신청 내용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서 이루어집니다.

환전이 가능한 기업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나 수입 대체물을 생산하거나 수입을 대체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거나 혹은 수출 생산 업체로, 자체 필요에 의해 원자재나 부품, 기술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음료수, 완제품 자동차, 카펫, 식물, 미술제품 등은 환전 금지 품목입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긍정적인 경우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위원회가 승인을 하면, 환전 면허 발급을 위해 중앙은행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또한 고유의 권한으로 청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의해 환전스케줄링에 포함되었다는 통고를 받아도 보통 3개월 이내 환전이 진행되는 것은 힘듭니다. 외환 수요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외환을 필요한 수요처(기업 등)에 환전 스케줄링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데 전략적 투자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그 다음으로 국영기업, 특혜기업 등이 받으며, 일반 기업의 경우 계속해서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막대한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보통 공식환율이 1년에 10~20%이상 평가절하되며 암시장환율은 그 이상의 평가절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보관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업은 수입부품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의 환전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환전은 나중에 세무조사나 기업 라이선스 취소,



법인대표의 추방 등으로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우즈베키스탄 한국기업들의 이같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 대사관에서도 항상 가장 우선순위로 환전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열리는 한-우즈베키스탄 산업자원협력위원회와 경제공동 위원회에서 한국기업의 환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자사의 환전 문제를 항상 보고하고 대사관과 우리 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우, 한국기업에 한해서 환전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지 대사관이 환전해 주어야 할 기업리스트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환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자금을 적어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금융조달이 쉽지 않는 관계로 단기적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돌리면 환전 문제로 흑자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전을 1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기업 운영을 한다면 환전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수기업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의 원료와 저임금을 결합한 수출기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환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숨이 필요하고 내수기업은 장비 및 이자 송금 등을 위해서 경화가 필요한데, 두 회사를 적절히 운영하면 우즈베키스탄 현지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전 문제가 우즈베키스탄 기업경영 리스크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년동안 이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대처하여 왔습니다. 중국, 터키, 인도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전리스크임을 감안한다면 환전 문제 해결의 노하우는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의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통관 문제(I사)

【애로사항】

저희 업체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두 곳에 물자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비용은 들어도 해결은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비용도 문제지만 복잡한 통관 행정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물류와 통관에 관한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진출 B업체).

【대처방안】 14)

우즈베키스탄의 운송과 통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식 통관,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통관절차의 까다로움, EDI(전산화)미비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로 송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러시아로 수출할 제품을 유럽으로 우회 수출하여 비정식 통관하던 방식이 2007년부터 러시아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정식 통관이 되고 있어서 러시아 업체가 정식 수입 통관 후 수입대금을 수출처로 송금하는 것이 자유스럽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이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불법에 가까운 비정식 통관 방식을 지금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수입에 대한 세수확보가 어렵고 건수가 적다보니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EDI 시설 미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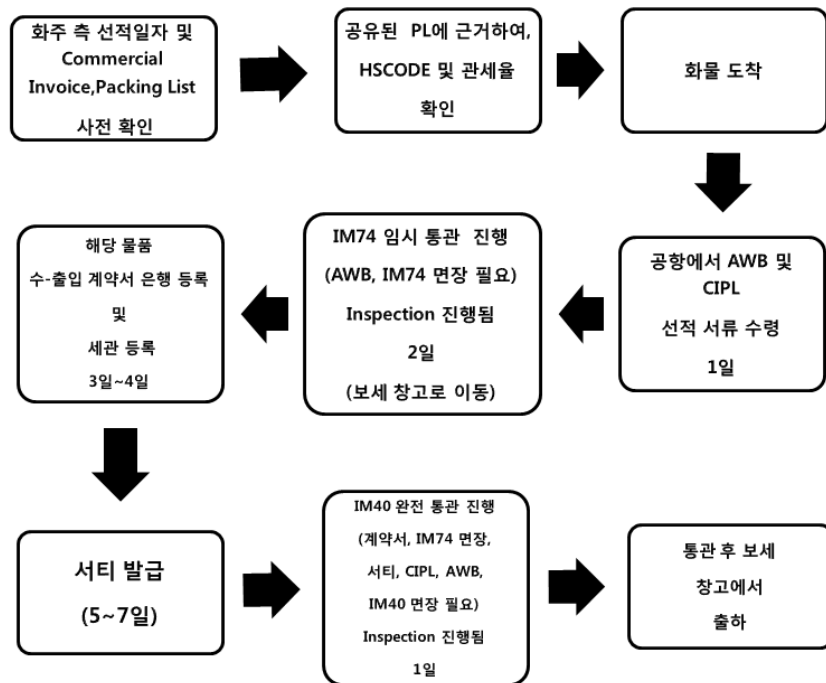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이 주변 국가와 통관절차가 다른 점은 Import 74와 Import 40이란 수입통관절차 때문입니다. Import 74는 간이 수입통관절차로서 해당국가 세관 측에서 인정하는 기간까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세관 창고 내 보관이 가능하며 수입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수입통관 또는 제3국으로도 수출통관 그리고 반송도 가능한 시스템이고 Import 40은 도착지에서 즉시 완전수입통관을 하는 절차입니다.

14) 김익준 ECOVICE 대표. 이력은 앞 장 참조.



주변 국가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수입통관을 하며, 수입자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Import 40으로 바로 통관, 수입자가 확정인 안 되는 경우 Import 74로 간이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세관은 모든 수입화물에 대하여 우선 Import 74로 임시통관을 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Import 40으로 완전통관을 시켜줍니다. 그러한 문제로 통관에 관하여 인건비를 포함하여 통관 절차비용과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림 5] 우즈베키스탄 통관절차



통관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증명서(certification) 문제입니다. 발급 기관이 모두가 다른 곳에 분포하여 있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각 기관마다 최소 5일부터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므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해도 해당 제품에 대한 각각의 증명서를 받아야하기에 실제 수입통관 절차는 15일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매 분기별 지역 세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분기 말 7일~10일간 수입통관이 금지됩니다. 특히 해당기간 지역세관별로 수입통관이 수출통관에 비하여 많은 경우 금지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수입자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닌 내부방침으로서 수입을 지양하는 목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중앙세관은 각 지역 세관별로 수입출입 밸런스를 무조건 맞추라는 지시합니다. 해당기간은 사전에 통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수입자측 화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통관이 보류가 되며 해당기간에 창고료 등이 발생되고 특히 보안이 잘 갖춰지지 않은 세관내 창고에서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내 한국물류업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국제운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관분야에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통관으로 인원대비 수익구조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분야를 구축하려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통관에 필요한 사례와 자문을 얻고자 해도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주변국가의 사례를 보고 주변국가에서도 통관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국제운송과 통관을 병행하기 위해선 러시아에서 국제운송과 통관을 병행 서비스하는 업체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신제품 또는 HS CODE를 규정하기 난해한 제품들은 우즈베키스탄 세관조차도 판단이 어렵기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 주변국가에서 유사한 제품에 대한 통관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세관 측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 우즈베키스탄 복잡 과다한 세금(J사)

【애로사항】 【애로사항】

저희 회사는 우즈베키스탄에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회사인데 금액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세금 종류가 너무 많고 납기가 불확실해서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복잡한 조세제도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우즈베키스탄 진출 D업체).



【대처방안】 15)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법인 및 개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주로 우즈베키스탄 세법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 세	지 방 세
▶ 법인세 (평균 9%) ▶ 개인소득세 ▶ 부가가치세 (세율은 20%) ▶ 관세 ▶ 물품세 ▶ 지하구역이용에 관한 이용세 및 기타 특별세 ▶ 수자원세 ▶ 도로세 ▶ 통합사회보장세 ▶ 학교 및 의료세	▶ 재산세 ▶ 토지세 ▶ 사회인프라 개발세 ▶ 개인운송수단을 위한 휘발유, 디젤연료 및 가스세 ▶ 각종 수수료 및 부담금

이하에서는 세법상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설립하는 비거주자인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PE)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법인체(우즈베키스탄 법인) 및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상설 사업장을 통해서 활동을 하거나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외국기업을 납세자로 합니다. 여기에는 비거주자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정사업장(PE)을 설치하여 우즈베키스탄 내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사업장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PE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세법상 허용되는 법인세의 공제금액이 일반 법인체보다 축소되며, 고정사업장의 순이익이

15) 김영옥 변호사는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MGIMO) 법학과, 국제거래법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러시아연방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 미르 Senior Foreign Legal Consultant로 활동 중이다. e-mail : una1113@naver.com



소득의 10%이하가 될 수 없으며, 법인세 산정 후 추가적으로 순익에 대한 10%세율이 지점세 형식으로 부과됩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일반적인 우즈베키스탄 법인의 경우 2013년 현재 9%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 총 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물품의 수출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을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15%~30%미만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는 30% 법인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불 카드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의 10%를 감면해 주어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관련 산업 및 기부금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재개발, 신기술사용 등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30% 이상의 법인세율을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자세한 감세 관련 내용을 우즈베키스탄 세법을 확인하여 현지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20%이며, 면세품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나 비거주자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표 1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 징수 세율

원천 소득	적용세율
배당 및 이자소득	10% (우리나라의 경우 5%)
보험 및 재보험	10%
국제운수	6%
사용료, 임대소득, 인적 용역 및 기타 소득	20%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으로
상기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운수의 경우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자동차·철도의 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기업이면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며,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부과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는 면세
됩니다. 또한 배당세의 경우도 동 협약에 따라 배당세율은 총액의 5%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료의 경우도 동 협약에 따라 ①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사용료 총액의 2%, ②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료 총액의 5%만 부과됩니다. 다만 본 규정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PE)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
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진출의 초기 형태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 단위인 고정사업장(PE)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정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20조 이하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국제조세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고정사업장은 ①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며, ② 현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20조 및 한-우즈베키스탄 이중과세 방지조약 (1998.12.25)에 따르면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전, 가스전,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문에서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도 예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본점(외국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유지하는 것은 현지 조세법 상의 고정사업장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PE는 회사법 상 또는 민법상의 실체가 아닌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부가를 위해 필요한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법령상 지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정이 사실 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상 개념인 PE를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세법 상의 실체인PE명의로 현지인을 고용하거나 건설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통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령 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지사를 개설하는 것은 본 지점 간 외환거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나 PE 경우는 PE설치국에서의 이익금의 유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해외로의 과실송금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사를 개설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장점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UGCC 프로젝트 등 특수한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으로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특별법에 의해서 PE가 지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PE는 특정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PE의 역할도 종료됩니다. 특히 UGCC프로젝트의 경우 특별법 상의 면세 혜택 등을 광범위하게 부여 하고 있으므로 UGCC 프로젝트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UGCC 프로젝트의 경우 PE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지EPC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행정 관청에 제출하여야 PE설립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현지 법인을 개설할지 아니면 지점 및 PE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가능하면 조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복잡한 비자 발급 문제(K사)

【애로사항】

저희 회사는 특수기술 관련 회사로 한국에서 전문가나 기술자의 초청을 자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비자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비자 발급 비용 및 소요시간이 과다합니다. 그렇다고 복수비자 발급도 잘 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외교부의 확인 서류 증빙이 되는 한(비즈니스 출장 등)에 무비자 또는 공항비자 추진을 희망합니다(우즈베키스탄 진출 F업체).

【대처방안】 16)

우즈베키스탄 비자는 1996년 11월 21일 제정, 공포한 우즈베키스탄 내각 위원회 결정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우즈베키스탄 출입국 및 통과 규정에 대하여”에 근거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관용, 관광, 상용 등의 종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자연인, 법인 등이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 요청하여 발급되는 초청장에 근거하여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이원형 변호사는 단국대학교 법학과,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대학원 국제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소련 국가시험위원회 주관 변호사(Lawyer)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다. e-mail : lawcase@hanmail.net



<표 16> 관광 상용비자의 종류

번호	종 류	기 간	비 용
1	T(관광비자)	1주,2주,1달 (현지에서 비자기간 연장 안됨)	초청장비용 포함하여 여행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1주 13만원, 2주 145,000원, 1달 16만원
2	B2(상용비자)	1주,2주,1달,3달,6달,1년	대사관 비자발급비용 1주-66,000원, 2주-78,000원, 1달-9만원, 3달 단수-114,000원, 6달 단수-162,000원, 1년 단수-21만원, 입국횟수가 추가되거나 급행비자의 경우 비자비가 다름
3	학생비자		비자비용은 상용과 동일
4	가족초청비자		비자비용은 상용과 동일

우즈베키스탄 비자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긴급하게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초청장을 첨부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7일 이후에 방문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특정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최대 비자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1년 이내에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국가에 체류하며 비자를 갱신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구소련국가인 러시아는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2개월간 무비자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도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거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자에게는 초청장 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과 장기체류자에게는 비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공항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에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소련국가의 대부분은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거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단기 체류자에게는 거주등록을 폐지하였으나, 아직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거주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고, 출국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주등록제도에 대하여 3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거주등록을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들의 금융상의 애로사항(L사)

【애로사항】

저희 업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금융상의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과 완전히 다른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스템을 알고 싶으며 환전, 송금 분야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진출 G업체).

【대처방안】 17)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은행들은 제도나 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운용면에서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외환규제 등으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많아 외국기업의 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 상업은행의 업무 특화로 민간 및 외국계 상업은행들의 영업 기반이 매우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상업은행은 총 29개로 국영상업은행 8개, 민간상업은행 16개, 외국계은행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 중에서 상위 6개 국영은행의 자산이 은행 총 자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17) 강명구 박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지금은 산업은행 조사분석부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CIS,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다. e-mail : mgk101@kdb.co.kr



등 국영상업은행의 역할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은행 시스템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영상업은행 중에서 정부지분이 100%인 대외경제은행(NBU : 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이 은행 총자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 및 외환규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표 17> 국영상업은행의 특화

은행명	주요 업무	은행명	주요 업무
NBU	국제업무	Galla, Pakhta Bank	농업(곡물, 면화)
Asaka Bank	자동차 산업부문	Mcrocredit, Halq Bank	국민연금, 소매금융
Uzpromstroy Bank	연료, 에너지, 광업, 철강부문	Aloqa Bank	통신부문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의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째, 은행 계좌로부터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은행에 2개의 은행계좌를 가집니다.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화폐인 쉼(Sum)을 이용하는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외화(달러화) 통장입니다. 쉼화 통장은 근로자 임금, 사무실 비품 구입비, 우즈베키스탄 국내출장 등 주로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는데 사용합니다. 외화통장은 국외 출장, 제조업체의 경우 원부자재 수입 등 외화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개설한 통장이지만, 외부로부터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부터는 기업이 마음대로 출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종업원의 임금, 출장비,



해외로부터 수입을 위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을 하려고 해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출장을 위한 비용을 은행에서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일비, 교통비, 숙박 등을 제시한 후 정확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위한 여유분의 비용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환전과 과실송금이 어렵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외환을 통제하는 국가로 모든 거래는 현지 화폐인 우즈베키스탄 쉼(Sum)으로 하게 돼 있으며, 수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에 필요한 외환은 건별로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무역업자가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를 들여오기 위해 은행에 현지화를 예치하고 신용장(L/C)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은 다시 중앙은행에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이익의 과실송금도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며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¹⁸⁾. 마찬가지로, 과실송금을 위한 환전을 은행에 신청하면 정부의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의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인 기업운영을 위해 은행계좌로부터 자유로운 인출은 우리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금융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전과 과실송금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은 한국정부와 기업차원에서 해결도 가능합니다. 한국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국 정부간 환전 및 과실송금에 대한 협정 및 정상간 방문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과실송금은 우리나라 정상의 우즈베키스탄 국민방문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정기적인 국민

18) 이종섭,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환경 세계 최하위권', KOTRA, 2012.11.09



방문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기간이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간 협정을 통해 한국기업의 과실송금을 위한 환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에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정체결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계은행이 기업들의 환전과 과실송금을 도와 주고, 한국계은행이 환전한 숨을 매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환전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금융당국이 한국계은행들에게 연간 몇 차례(예를 들면, 매 분기말 또는 2개월에 한번)에 걸쳐 자유롭게 환전과 과실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계은행은 언제든지 기업의 요구를 들어 주고 은행은 협정에 따른 기간에 따라 환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차원에서의 금융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은 투자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할 때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환전 및 과실송금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불법적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섬유업체 A사가 사용하던 방법 중의 하나인데, A기업은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할 때 단가를 높여서 수입 함으로써 과실송금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위 원부자재가 1달러라면, 수입 계약서상 1.2달러 기입한 후, 그 차익을 한국에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전과 과실송금 문제를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나서서 우즈베키스탄 금융당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금융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다. 기타 국가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비자 발급 문제(M사)

【애로사항】

저희 회사들은 시장조사 목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들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한국의 Z업체).

【대처방안】¹⁹⁾

1) 키르기스스탄 비자제도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소재 기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외국인 출입국에 관하여 자유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입국과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법률은 「해외이주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률」(No. 61, 제정 2000년 7월 17일, 최근 개정 2013년 7월 24일)(이하 ‘해외이주법’)입니다.

외국인은 여권을 포함한 유효하고 적법한 문서 및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하 ‘키르기스스탄’) 입국 비자 또는 출국 비자에 의해 키르기스스탄에 출입국할 권리가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6조). 한편 「일부 국가 국민들에 대한 60일 기간의 무비자 도입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법률」(No.121, 제정 2012년 7월 21일, 최근 개정 2013년 7월 19일)에 의해 무비자 대상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 국민은 최대 60일간 키르기스스탄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입국비자는 해외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되며,

19) 이승민 변호사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MGIMO) 국제법학부, 동 대학에서 국제환경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러시아 변호사이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 중앙아시아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e-mail : smlee@jipyong.com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는 경우,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내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도 가능하며(해외이주법 제13조), 마나스 국제 공항에 도착 후 비자발급도 가능합니다.

마나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 및 비자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종류	비자발급 수수료(USD 기준)
일반비자(관광비자 제외), 1개월 / 1회용	70
일반비자(관광비자 제외), 1개월 / 2회용	100
관광비자, 15일	50
관광비자, 1개월	60
관광비자, 1개월 / 2회용	70
통과비자	40
통과비자 / 2회용	50

한국 국민의 경우 60일까지는 무비자로 키르기스스탄 체류가 가능하나, 60일일을 초과하여 키르기스스탄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키르기스스탄 입국·출국·체류 간이제도를 규율 하는 법규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령」(No.735, 제정 1999년 12월 31일, 최근 개정 2005년 1월 12일)에 따라 현재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 및 타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은 비자발급 간이제도 적용 국가로 지정되어 비자 취득 절차와 서류 면에서 비적용 국가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순번	카테고리	타입	관할기관	기 간	비 고
1	외교	D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영사국	주재기간 동안 또는 3년 이하	
2	관용	O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영사국	주재기간 동안	
3	투자	INV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영사국	1년(2만 달러 투자 시), 2년(10만 달러 투자 시) 3년(20만 달러 투자 시)	
4	상용	B1, B2	국가등기청 주민등록국 (B1),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영사국(B2)	3개월(B1), 예외적인 경우 6개월까지 연장가능(1회만)/ 6개월(B2) 연장 가능	(B1)일반 협상, 계약체결, 컨설팅/회계용역, 전시회 참석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 (B2) 사회 단체·비영리·국제기구 직원, 국제기구 소속 직원 외
5	취업	W1, W2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영사국(W1), 국가등기청 주민등록국(W2)	노동허가 기간까지	(W1) 키르기스스탄 정부령에서 정한 56개국 국민 / (W2) 56개국 외 외국 국가 국민
6	유학	S	국가등기청 주민등록국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7	관광	TS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영사국 / 국가등기청 주민등록국	1개월, 예외적인 경우 2개월까지 연장 허용 / 1회용 및 2회용	
8	개인	P1, P2, P3	국가등기청 주민등록국	3개월. 체류목적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6개월까지 연장 가능	
9	종교	R	국가등기청 주민등록국	최대 6개월, 3회까지 연장 가능	
10	통과			최대 5일	

모든 외국인은 키르기스스탄내 목적지 도착 후 5일 이내 취득한 비자에 따라 체류지 관할 국가기관 또는 호텔에 체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제6조 및 제7조). 단, 무비자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의 경우에는 체류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해외이주법 제8조). 따라서 한국 국민의 경우 무비자로



키르기스스탄에 체류하는 60일 이내에는 체류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비자 및 체류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기목적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은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 6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서는 키르기스스탄 내 관할기관에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지키스탄 비자제도 일반

타지키스탄의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관련 기본 법률은 「이주에 관한 타지키스탄 법률」(No.881, 제정 1999년 12월 11일, 최근 개정 2010년 1월 12일)과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타지키스탄 비자 발급 절차 규칙에 관한 타지키스탄 정부령」(No. 122, 제정 2009년 2월 27일, 최근 개정 2012년 12월 3일)(이하 ‘비자발급 규칙’)입니다. 타지키스탄은 단수(1회), 2회 그리고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비자발급규칙 제4조).

순번	카테고리	타입	발급대상	기 간
1	외교	D	외국정상, 정부대표, 외교관 외	2년 이하
2	관용	X	외국 공식 대표단 일원 외	2년 이하(단, 해외 영사관에서는 최대 1년 이하)
3	투자	C	해외 유명 기업의 임원, 타지키스탄 투자 참여 기업의 임원	3년 이하(단, 해외 영사관에서는 최대 2년 이하) 50만 달러 이상 투자
4	상용	K	협상, 회의, 전시회 참석, 계약 체결, 합작법인 설립 등의 목적	1년 이하 / 연장 허용
5	취업	M	취업 목적	3개월 이하(타지키스탄 입국 후 근로허가 조건에 따라 연장)



순번	카테고리	타입	발급대상	기 간
6	선교	МД	종교단체의 직원으로 소속된 외국인	1년 이하 / 연장 허용
7	인도주의	Б	인도지원 물품을 운송하는 외국인	1년 이하(단, 해외 영사관에서는 최대 3개월 이하) / 연장 허용
8	기업	СИ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3개월 / 근로허가 조건에 따른 연장 허용
9	개인			3개월 / 단수 / 극히 예외적인 경우 연장 허용
10	관광		관광 목적의 외국인	45일 이하 / 단수 / 극히 예외적인 경우 연장 허용. 3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체류등록 의무 면제
11	유학		유학 목적으로 타지키스탄 내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외국인	1년, 연장 허용
12	통과		항공기 또는 차량으로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외국인	72시간

이외에도 특수 종류의 비자로서 경제자유구역 근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국제차량운송 기사들에 대한 비자,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비자, 해외 언론사 소속 직원에 대한 비자, 타지키스탄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 등이 있습니다.

비자는 타지키스탄의 해외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을 합니다(비자 발급규칙 제1조 제6항). 다만, 아직까지 타지키스탄은 한국에 상주하는 대사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타지키스탄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류접수로부터 검토 및 발급까지는 20 영업일 이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최대 10 영업일을 연장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비자발급규칙 제6조 제2항). 단, 비자발급 수수료(일반/급행) 지급 금액에 따라 비자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비자발급규칙 제6조 제3항). 그러나 한국은 비자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에 해당되어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서류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받습니다. 실무상 비자 종류에 따른 초청장 발급에 1주일 그리고 비자발급에 2일 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타지키스탄 외무부 영사국이 담당합니다. 비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인은 기존의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와 함께 법령에서 정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비자 기간 만료 20 영업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비자발급규칙 제7조 제1항). 만약 비자소지자의 과실로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지키스탄 법률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비자 연장에 관한 결정은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내려집니다. 만약 비자연장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기존 비자는 취소가 되며, 7일 이내 출국할 수 있는 출국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비자발급규칙 제7조 제2항).

「외국인 여권등록규칙에 관한 타지키스탄 정부령」(No. 663, 제정 2011년 12월 30일)(이하 ‘체류등록 규칙’)에 따르면 임시로 타지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자신의 여권을 등록하여야 하고, 체류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체류등록 규칙 제2항).

외국인은 체류 소재지 관할 기관에 자신의 여권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호텔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호텔에 등록을 합니다. 체류등록기간은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체류등록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체류등록 규칙 제8항).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타지키스탄도 한국에 대해서는 간소화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 내 타지키스탄 대사관이 없는 문제로 인해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양국간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투르크메니스탄 비자제도 일반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관련 기본 법률은 「이주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법률」(No.290-IV, 제정 2012년 3월 31일, 최근 개정



2013년 5월 4일)(이하 ‘이주법’)과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절차 개선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령」(No. 6135, 제정 2003년 2월 21일, 최근 개정 2005년 7월 13일)(이하 ‘비자발급 규칙’)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단수 및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비자발급규칙 제4조). 단수비자의 경우 최소 10일부터 최대 2년대이며, 복수비자의 경우 최소 1개월 2년 기한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순번	카테고리	타입	발급대상
1	외교	DP	외국정상, 정부대표, 외교관 외
2	관용	OF	외국 공식 대표단 일원 외
4	상용	BS	협상, 회의, 전시회 참석, 계약 체결, 합작법인 설립 등의 목적
5	취업	WP	취업 목적
9	개인	PR	
10	관광	TU	관광 목적의 외국인
11	유학	ST	유학 목적
	치료	HL	치료 목적
12	통과	TR	항공기 또는 차량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는 외국인

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해외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을 합니다(비자발급규칙 제10항). 다만, 아직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에 상주하는 대사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입니다. 다만, 발급 수수료에 따라 최대 3영업일까지 단축되어 발급하고 있습니다(비자발급 규칙 제11항).



비자기간	단수 수수료(USD)	복수 수수료(USD)
10일	35	
20일	45	
1개월	55	75
1개월 초과	55 + 초과 1개월당 30 USD 곱하여 계산	
2개월		115
3개월		155
3개월 초과		155 + 초과 1개월당 40 USD 곱하여 계산

비자 종류	비자발급 급행 금액(USD)	비자 발급 기간
비자 종류 및 횟수와 무관	120	당일 발급
	90	2 영업일
	60	4 영업일
	30	4 영업일 초과 10 영업일 미만

한편, 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지 아니한 외국인은 아쉬하바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비자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초청기관의 초청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기간은 최대 10일이며, 투르크메니스탄 이민청을 통해 연장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주법에 따르면 임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입국일 제외) 체류 등록하여야 합니다(이주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체류 소재지 관할 기관에 자신의 여권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호텔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호텔에 등록을 합니다(비자발급 규칙 제30항).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나 일부 인접국가를 제외하고 무비자나 비자발급 간소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비자발급 비용에 따른 비자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비자발급을 위해 초청장 발급부터 비자신청 서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서류와 기간 소요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현재는 한국 내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없는 문제로 인해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양국간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타지키스탄으로 수출 보험 문제(N사)

【애로사항】

저희 회사는 타지키스탄으로 수출 물량을 오더받았습니다. 현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이나 타지키스탄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어서 수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Z업체).

【대처방안】²⁰⁾

무역에 첫발을 내딛는 중소기업의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과연 수입자는 믿을 만한 지, 수출을 이행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수출을 무사히 한다 해도 대금결제기간까지 봉착하게 되는 자금난 등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수출보험입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서 수출이행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 이미영 부장(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부). e-mail : Lmy0214@ksure.or.kr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비율 100%). 예를들어, 중소기업 A사는 기존에 일본의 수입자로부터 선수금 결제를 받고 소량의 신발을 수출해왔으나 이 수입자가 전과 달리 대량주문을 조건으로 외상결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수출자는 불안했지만 K-sure의 도움으로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였고 걱정했던 대로 수입자가 수출대금 결제를 하지 못했으나 보험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중소중견기업 플러스(Plus+) 보험입니다. 단기수출보험과 유사한 제도로써 연간 수출실적 U\$3백만 이하의 중소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책임한도는 U\$30만(1년 단위로 갱신)으로 수입자 신용조사, 수출통지 절차를 생략하여 가입절차가 빠르고 사용자 중심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 보험제도로써 단기수출보험과 같이 수입자 수출대금 미결제 위험,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위험, 수입국 비상위험 등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또는 수출유관기관을 통한 단체가입도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셋째로는 수출신용보증입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중소기업이 수출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으므로 수출자의 금융기관 대출거래 연체 등과 같은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K-sure가 이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sure는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입자 기본정보부터 재무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K-sure의 무역보험을 10년 넘게 이용해 오며 수출초보단계에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중소기업들이 K-sure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입니다.



▣ 투르크메니스탄 자금조달 문제(0사)

【애로사항】

저의 회사는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및 석유화학 분야 진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기회들이 입찰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 국가에 대한 정부가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시 필요한 금융 지원이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처방안】²¹⁾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대부분의 신흥국들의 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투자 심리는 오히려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 위주의 제한적 투자만 진행되며 재무적 투자자나 PEF 등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의 신흥국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후반 천연가스 부국으로 한국 내 관심이 급격히 올랐던 투르크메니스탄이었지만, 최근 시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투자 제안서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워낙 낮은 국가 신용도로 인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국내 민간 금융기관, 연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사례 전무합니다. 2009~2012년 기간 중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PF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PF는 각각 182억 달러와 65억 달러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 산하 금융기관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금융 지원한 사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LG

21) 오영일 박사는 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러시아 경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러시아, CIS 등 신흥시장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 youngil@posri.re.kr



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 참여하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탈항설비 건설 사업에 수출입은행에서 총 4.35억 달러(대출 2.45억 달러, 보증 1.9억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 사례가 있으나 그 이후 전무합니다. 이 역시 당시 정부의 자원 에너지 외교라는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S&P, Fitch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등급을 부여한 적도 없고, 그나마 2002년 B2 등급을 부여했던 Moody's 역시 2010년 9월 등급 부여를 철회 하였는데, 정부신용등급 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자료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ADB 등 다자개발은행 역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지원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2012년말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ADB의 대출 규모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1.25억 달러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금액, 건 수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장 저조한 실적임입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 35.2억 달러, 키르기스스탄 8.3억 달러, 타지키스탄 3.7억 달러에 달합니다. EBRD 역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작은 편입니다. 2013년 10월 1일 기준, 총 누적 지원액은 1.63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 누적 지원액 5.12억 유로, 키르기스스탄 누적 지원액 3.82억 유로에 이릅니다.

비즈니스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큰 리스크는 폐쇄성입니다. 사업 기회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영문 자료 제공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유능한 파트너 물색 곤란합니다. 핵심 기업이 모두 국영 기업이라 업무 프로세스가 더디고 관료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이 폐쇄적 성격을 지닌 국가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현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이 있어 공관 사이트를 통해 기본 정보가 제공되지만, KOTRA 무역관이 현지에 없어 다른 중앙아 신흥국들에 비해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비즈니스 사업 기회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신뢰성 부분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입자 사전 신용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데이터에도 투르크메니스탄 기업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능한 지 불분명합니다.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 특성 상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국내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는 중앙아시아 관련 연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연구 비중도 높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교류가 많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를 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에 투르크메니스탄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 그나마 현지 경험이 있는 대사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등 국가 기관에서 주관하는 중앙아시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들이 활발히 참석하여 정보와 네트워크 공유를 기대합니다.

제4장 국가별 진출시 유의사항과 비즈니스 프로토콜





제4장 국가별 진출시 유의사항과 비즈니스 프로토콜

1. 카자흐스탄

가. 진출시 유의사항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처음 진출하게 되면 카자흐스탄인보다는 현지 한국인이나 고려인 파트너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원자재 거래나 이권 등을 핑계로 권력층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한국인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현지 파트너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타당성을 밑바닥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여러 사람을 통해 현지 파트너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가 긴급상황을 내세워 무리한 계약을 요구할 때도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급적 진출 초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나 합의서 작성은 삼가고 현지 상황과 사업 파트너, 관련 사업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시장성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대사관이나 한국 교민회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현지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증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카자흐스탄에서 단순한 계약서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믿을 수 있는 현지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에서 현지인 친구가 반드시 민족적으로 카자흐스탄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은 약 120개의 민족이 거주하며,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뿐만 아니라 우즈베



키스탄인,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등이 있다. 현지인의 마음을 파고들고 이들과 제대로 사귀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나 카자흐어 등 언어습득은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인은 유목민족의 후예로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고 어떤 이야기도 좋은 방향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상의 문제를 호의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없고 성공 가능하다는 현지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분야가 더 많으며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알 수 있다. 현지인들과 사귀는 것도 좋지만 현지인의 시각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카자흐스탄인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잘 시인하지 않으며 항상 잘 알고 있는 척 한다는 점이다. 직원들을 데리고 있을 때 이러한 문제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 문화의 좋은 점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위에서 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려 준다는 점이다. 특히 보스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사업 초기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현지인은 우리 고려인 동포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1930년대 연해주에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은 근면함,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 탁월한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다. 특히 고려인은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통역이나 중간 관리자도 많이 있는데, 이들과 제대로 사귀기 위해서는 돈이나 위세를 떨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이들의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나. 비즈니스 프로토콜

유목민족의 후예인 카자흐스탄인은 손님 대접은 어느 민족에 못지않게 극진하다. 카자흐스탄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 음식으로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 나오는 음료인 꾸미스와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베스빠르막, 까즈,



양고기 삶은 것, 둥글고 납작한 전통 빵인 리쁘쉬카 등이 있다.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카자흐스탄인 집에 손님으로 초대 받았을 때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다. 만약 카자흐스탄 가정에 초대를 받는다면 초대 받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손님을 초청한 주인은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는다. 집으로 초대 받으면 꽃과 주류를 사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카자흐스탄인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처음 인사할 때는 공식적인 인사말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힌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구두인사가 있기 전에 악수를 먼저 한다. 악수는 가볍게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한 한 힘 있게 악수를 건넨다. 이 같은 방식으로 친절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다. 친한 사이는 악수하면서 포옹을 한다.

카자흐스탄인은 러시아인만큼 보드카를 좋아한다. 보드카를 마시게 되면 처음 받은 술은 한 번에 들이켜야 한다. 술은 혼자 음미하며 마시기보다는 건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마시는 것이 기본적인 주도이다. 상대방 잔에 술이 남아도 술을 채워주는 것이 러시아식 주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에 조심해야 될 금기 사항으로 신발을 얹어 놓으면 안 된다. 만일 어느 누군가의 잘못으로 신발이 뒤집어지면 바로 세워 놓아야 한다. 신발을 벗은 후 가지런히 세워놓고, 말끔히 정돈해 놓아야 한다. 신발이 뒤집어지면 주인에게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돈되지 않은 신발은 길을 가는 도중에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인을 사무실로 초청해서 상담을 할 경우 항상 충분한 음료수, 차, 커피(플라스틱 잔은 피할 것), 페스트리빵, 쿠키, 간식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간식거리가 없으면 찾아온 손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2. 우즈베키스탄

가. 진출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인들은 18세기부터 러시아와 소련의 지배를 받았으며, 1992년부터 비로서 독립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문화적으로 유목의 전통과 세속주의 이슬람, 그리고 러시아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유목적 특성은 오늘날에도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잘 나타난다. 외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흥정과 교섭을 즐겨하며 장사에 능수능란하다.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유목적 성격으로는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태도를 견지하기가 쉽지 않고 자주 입장을 바꾸어서 교섭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은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 법이나 계약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고 영향력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시장경제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행과정도 불투명하다. 또한 사회주의체제의 비밀주의 및 관료주의가 여전히 만연해 있어 제대로 된 정보수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지의 유력인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상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인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상대방 파트너 가족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족형태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대체로 대가족단위로 3~4대가 모여 살고 가부장적인 권위와 그에 따르는 복종과 순종의 형태로 가족의 질서가 유지된다. 전통적으로 자녀가 결혼을 하여도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사는 풍습이 있다. 가족들은 가장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복종한다. 우즈베크인과의 지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와 파트너의 부인 또는 자녀들의 생일을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인맥을 구축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지 고려인 동포들이다. 러시아 말이 힘든 대부분의 한국 비즈니스맨들은 처음에는 고려인 통역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보통 고려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기회 포착 능력도 뛰어나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고려인 직원이나 파트너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같은 동포로서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인은 순박하며 낙천적이며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한 가족처럼 대해주며 쉽게 친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호전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은 면전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없으나 약속 관념이 희박하다. 면전에서는 OK라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긴다. 근대적인 계약 관념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하라쇼’, ‘OK’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하다. 따라서 이들과 계약을 할 때는 계약위반 상황에 대한 벌칙을 주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약속 이행이 상당히 느린 편이다. 특히 당장 이용가치는 없지만 버리기 싫은 거래 건에 대해 이러한 이행 지연이 심한 편으로 보통 최종 결정 지연작전을 구사한다. 이러한 이행 지연은 더 이상 지연이 불가능할 때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야 거래 거부 혹은 면담 거절을 통보한다. 이러한 경향은 거래 조건이 자신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또 다른 거래선을 물색함에 따른 것으로 이행이 지연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웬만큼 기존 거래선이 있어도 새로운 거래선을 끊임없이 찾아 나섬. 거래선을 변경할 때에도 이익이 더 큰 것을 찾기 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태도에 더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거래 계약서보다는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서류보다는 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 비즈니스 프로토콜

우즈베키스탄인과 만나게 되면 초면에는 악수를 하지만 관계가 상당히 진척 되면 어깨를 얹어 안고 포옹을 하며, 처음에는 상대의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두 번 포옹을 한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인사법은 러시아적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식 악수는 오른 손으로 악수할 때 왼손은 오른팔 팔꿈치 쪽으로 배를 두르듯 하는 것이다. 감사 표시는 오른 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며 감사의 말을 한다. 처음 만났을 때는 간단히 개인 및 회사를 소개하고 어떤 이유로 찾아 왔는지 설명하고 식사 초대 등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예의와 상하관계를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방문할 기관이나 회사가 결정되면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 한다. 우리와는 상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자칫 잊기 쉽고 잘못 발음하였을 경우 큰 실례가 된다. 가능하다면 간단한 인사말은 우즈베키스탄어로 할 수 있도록 배워두는 것이 좋다. 간단하지만 선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선물하려는 물건 중에는 그리스문자나 문장무늬가 들어 있으면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디자인 선택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인은 손님에 대한 접대를 중요시하며 러시아적 전통이 많이 섞여 있다. 식사에는 보드카나 맥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음주 습관은 러시아식으로 첫 잔은 단번에 모두 마시는 것이 예의이다. 술잔에 술이 남아 있더라도 계속 첨잔을 해서 항상 술잔이 가득 차 있도록 해야 한다. 술을 마시기에 앞서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인사말을 상당히 길게 하는데, 주로 건강이나 사업 성공, 가족이나 친구의 안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외부 손님들도 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러시아어나 우즈베키스탄어로 인사말 정도는 외워서 건배 제의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3.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가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3~4년 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르크 정부가 발주하는 석유 화학 플랜트 건설 등을 수주하면서 이 지역 진출이 활발해졌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진출 장벽이 꽤 높은 편이다. 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하여 우리기업들은 대부분 지사를 개설하게 되는데, 외국법인의 현지 지사를 개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도 무척 많을뿐더러 심사 과정도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된다. 현지에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도 경제개발부 심사를 거쳐 외국인투자청 등에서 재심사를 하는 등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각 단계마다 보정 서류가 요청이 되는데 과연 이런 서류들이 왜 심사과정에서 필요할까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종종 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서 번역과 공증 및 외교부 영사인증(아포스티유)을 받아서 보내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반면 이 지역은 신규 진입이 어려울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이 독과점 이익을 누리는 경향이 있으며, 세금 등이 낮고 이익금에 대한 과실송금이 허용되므로 진출에 따른 장점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의할 사항은 현지 행정 관행을 접촉하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를 현지인에게 불평하거나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 나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 등도 삼가 하여야 하며, 현지 여성과 교제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심지어는 추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파트너와 사업을 하거나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자신들이 일 처리를 잘못하여 상황이 곤란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락이 안 되거나 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현지인의 주소지, 현지파트너와 가까운 지인 등의 연락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4.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의 어원은 ‘40의 민족’ 또는 ‘40인의 딸’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키르기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의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은 19세기부터 러시아 지배에 들어갔으며 1918년부터는 ‘투르케스탄(Turkestan)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에 편입되었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 소련방의 일원이 되었을 때, 키르기스 사회는 세 개의 주요 씨족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왼편 날개’를 의미하는 ‘솔 카나트(Sol kanat)’, ‘오른편 날개’를 의미하는 ‘옹 카나트(Ong kanat)’, 어느 편도 아닌 ‘이즈킬릭(the Ichkilik)’ 등이다. ‘솔 카나트’는 주로 북부와 서부에 거주하는 7개 씨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옹 카나트’는 남부에 근거를 둔 ‘아디진(the Adygine)’이라는 한 개 씨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가장 키르기스적인 씨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러한 씨족·부족 공동체는 특정 지역 및 지방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가 중요한 사회·정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씨족들의 지역적 분리는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의 특징인 분열과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권력을 잡고 있는 씨족과 손을 잡는 것이 좋다. 씨족에 의해 권력이 바뀌면 중요한 정책적 결정도 뒤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투자하려면 다양한 씨족과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르기스스탄은 높은 산들과 비옥한 계곡이 많고 고산 목장지로 부유한 나라이며 전통을 존중하는 유목민족으로 ‘손님대접’이 융성하기로 유명하다. 키르기스에는 집에 온 손님에게 차를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차(茶)문화가 있다. 따라서 키르기스인의 집에 들어간 손님은 최소한 한 잔이라도 차를 마시고 나와야 한다. 차와 함께 간단한 빵도 나오는데 빵은 손으로 뜯고 손으로 먹는 것이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차이에 관계없이 전통적으로 윗사람을 존중한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꺼리낌없는 태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악수를 하는 경우에도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랫 사람이 윗사람에게 악수로 인사를 할 때는 적절한 속도로 윗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양손을 뻗어 악수를 청한다. 여자들은 대부분 악수 없이 인사말로 대신한다.



5.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내륙국가로서 국토의 93%가 산악지대이다. 타지키스탄의 동쪽에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 뻗어 있으며, 가장 낮은 지대도 해발 300m 이상으로 교통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다. 수도 두산베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국내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지역적으로 고립된 마을도 많이 있다. 이들은 중앙 행정이나 법률보다는 씨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더 잘 따른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극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없다. 인구도 작고 지리적으로 극도로 분산되어 있어서 소비 시장의 규모도 크지 않다. 타지키스탄과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나 다른 정부가 제공하는 ODA나 원조자금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ADB나 중국이 다양한 인프라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펀드에 입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씨족이나 집안의 최고 어른의 권위가 강하기 때문에 현지 가정을 방문할 때는 이들의 선물을 챙겨주는 것이 호감을 준다. 타지키스탄인들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 접대한다. 저녁에 타지키스탄인과 함께하는 식사는 보통 2시간 이상 소요된다. 초대할 현지인 호스트 식탁 위에 놓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기 좋게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양고기 스프(술빠)가 나오고 중간에 양고기나 소고기 꼬치구이(샤슬릭), 마지막에는 목화 기름에 볶은 기름밥(플로브)이 나온다.

CENTRAL ASIA NATION

CENTRAL ASIA NATION

참 고 자 료





참고 1 중앙아시아 5개국 국가별 현황(2013년 기준)

1. 카자흐스탄

□ 일반사항

- 수도 : 아스타나(97.12월 천도/69만명)
※ 이전 수도 : 알마티
- 인구 : 1,690만명('12)
- 면적 : 2,717,300km²(세계9위, 한반도의 12배)
- 위치 :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접경)
- 기후 : 건조, 대륙성 기후
- 주요도시 : 알마티(150만), 쿠파켄트(65만), 카라간다(56만), 타라즈(34만)
- 주요민족 : 카자흐인 59.2%, 러시아인 25.6%, 우크라이나 2.9%, 우즈베크인 2.9%, 독일인 1.4%, 기타 8%
- 언어 : 카자흐어, 러시아어(통용)
- 종교 : 이슬람교 70%, 러시아정교 23%, 개신교 2%, 기타 5%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 의회 : 양원제
 - 상원(Senate) : 47명, 임기 6년(3년마다 1/2씩 개선)
 - ※ 상원의장 : 마미(K.Mami)
 - 하원(Majilis) : 107명, 임기 5년
 - ※ 하원의장 : 니그마툴린(N.NIGMATULIN)
- 정부주요인사
 - 대통령 :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 총리 : 아흐메토프(Serik Akhmetov)
 - 외교장관 : 이드리소프(Erlan Idrisov)

□ 경제현황 ('12)

- GDP : 1,934억불
- 1인당 GDP : 11,443불
- 경제성장률 : 5.5%
- 교역규모 : 1,329억불
 - 수출 : 887억불
 - 수입 : 442억불
- 화폐단위 : 텡게(Tenge)(US\$1≒147.4)
- 주요자원 : 석유(매장량 300억배럴로 세계10위), 가스(매장량 1.9조m³로 세계17위), 우라늄(매장량 세계2위), 석탄(336억톤, 세계8위), 크롬, 아연 등
- 유가상승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연평균 10% 경제성장해 오다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 국면을 보였으나 09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세 시현

□ 북한과의 관계

- 92.1 외교관계 수립
- 98.2 주카자흐 북한대사관 철수(주러 대사관 관할)
- 대북 교역규모(06) : 수입 162만불(대북 수출 전무)
 - 수입품 : 제도차량, 광학기기, 화학제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공식관계
 - 92.1.28 (공관설치 : 93.7.12)
 - 공관장 : 백주현 대사(7대, 12.3월 부임)
 - ※ 주한대사 : 바키세프 대사(12.2월 부임)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2, 한국기준) : 11.9억불
 - 수출 : 8.8억불 (기계, 합성수지, 전자)
 - 수입 : 3.1억불 (철강, 비철금속, 금,은)
- 대카자흐 투자('12 누계) : 약 32.88억불(신고 기준)
 - 삼성물산, LG전자, 국민은행 등 진출
- 대한 투자('12 누계) : 약 462만불 (신고 기준)
 - 고려인 동포 : 약 10만명(비공식 약 13만명)
- 제카자흐 교민 : 약 1,900명
- 주요 인사교류
 - 95. 5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
 - 03.1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
 - 04. 9 노무현 대통령 국민 방문
 - 06. 9 한명숙 국무총리 방카
 - 08. 2 슈케예프 부총리 방한
 - 08. 5 한승수 국무총리 방카
 - 08. 7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방카
 - 08. 8 북경올림픽 계기 양자 정상회담
 - 08.10 유명환 외교장관 방카
 - 09. 5 이명박 대통령 국민 방문
 - 09. 7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카
 - 10. 3 이세케세프 부총리 방한
 - 10. 4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국민 방한
 - 10. 4 니그마툴린 누르오타당 제1부총재 방한
 - 10.10 이만의 환경부장관 방카
 - 10.10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방카
 - 10.12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방카
 - 11. 1 정병국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방카
 - 11. 5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 11. 8 이명박 대통령 공식 방문
 - 12. 3 '나' 대통령 방한(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 12. 5 켈람베토프 부총리 방한
 - 12. 9 이명박 대통령 공식 방문
 - 13. 2 사긴타예프 제1부총리 방한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 13.9 G20 계기 양자 정상회담

□ 주요 국내정세

- 05.12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3선
- 07. 5 헌법 개정(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11. 4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4선
- 12. 9 내각 개편(아흐메토프 총리 임명, 이드리소프 외교장관 등 3개부처 장관)
- 13. 1 정부조직 일부 개편(지역개발부 신설, 경제예산기획부 개편 등)



2. 우즈베키스탄

□일반사항

- 수도 : 타쉬켄트(약 240만명)
- 인구 : 2,910만명(중앙아 최대)
- 면적 : 447,400km²(한반도의 약 2배)
- 기후 :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주요민족 : 우즈베키스탄(80%), 러시아(5.5%), 타지크인(5%),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 고려인(0.9%)
- 언어 :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기타 3%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 의회구성(총 250석)
 - 상원(100석), 하원(150석)
 - 자유민주당, 재건민주당, 인민민주당 등
- 정부 주요인사
 - 대 통 령 : 카리모프(Karimov)
 - 총 리 : 미르지요예프(Mirziyoev)
 - 외교장관 : 카밀로프(Kamilov)
 - 상원의장 : 사비로프(Sovirov)
 - 하원의장 : 타쉬무하메도바(Tashmukhamedova)

□경제현황 ('12 EIU 추정치)

- GDP('12년) : 500억불
- 1인당 GDP('12년) : \$1,718
- 경제성장률('12년) : 7.4%
- 화폐단위 : 솜(som)(US\$1≒2,021솜)
- 교역규모 : 210억불('12년)
 - 수출 : 124억불
 - 수입 : 86억불
- 주요자원
 - 원유·가스(확인매장량) : 원유(6억배럴), 가스(1.6조m³)
 -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 : 금(1,700톤, 10위), 우라늄(9.6만톤, 12위), 몰리브덴(6만톤, 11위)
- 외환보유고('12년) : 160억불

□최근 주요 정세

- 카리모프 대통령, '91.12월 직선대통령 당선, '95.3월 국민투표로 임기 연장
 - 00. 1월 재선
 - 02. 2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연장(5년→7년)
 - 07.12월 재선
 - 09.12월 총선 결과 집권당 승리
 -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92.1.29
- 공관설치 : '93.12월
 - 공관장 : 이옥현 대사(13.6 부임)
 - ※ 주한공관설치 : '97.1월(현재 : 대사 공석)
- 교역규모('12년) : 18.1억불
 - 수출 : 17.7억불(자동차부품, 원동기 등)
 - 수입 : 0.4억불(농산물, 천연섬유사 등)
- 대우즈벡 투자('12년말 누계, 신고기준) : 12.8억불
 - 대우, 가스공사, 코오롱 등 진출
- 대한 투자('12년말, 누계, 신고기준) : 1,790만불
- 고려인동포 : 약 17만명(CIS내 최다)
- 재우즈벡교민 : 약 3,000명
- 주요인사교류

(訪韓)

- 92. 6월 카리모프 대통령
- 95. 2월 할릴로프 국회의장
- 95. 2월 카리모프 대통령
- 97. 9월 술타노프 총리
- 99.10월 카리모프 대통령
- 06. 3월 카리모프 대통령
- 07. 5월 할릴로프 하원의장
- 08. 2월 카리모프 대통령
- ※ '08. 8월 북경 올림픽 계기 양자정상회담
- 10. 2월 카리모프 대통령
- 11. 6월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
- 12. 9월 카리모프 대통령
- 13. 2월 아지모프 부총리
- ※ 대통령 취임식 계기

(訪우)

- 94. 6월 김영삼 대통령
- 00. 6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05. 5월 노무현 대통령
- 05. 8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 05.10월 김원기 국회의장
- 06. 9월 한명숙 총리
- 08. 5월 한승수 총리
- 09. 5월 이명박 대통령
- 11. 8월 이명박 대통령
- 12. 1월 박희태 국회의장
- 12. 8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13. 1월 이재오 특사
- 13. 5월 양승태 대법원장
- 13. 5월 한-우즈벡 친선협회(이재오 의원 등)

□북한과의 관계

- 92. 2월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1. 2월 대사 공석



3. 투르크메니스탄

□ 일반사항

- 수도 : 아쉬하바트(Ashgabat, 80만명)
- 인구 : 518만명('10)
- 면적 : 488,100km²(한반도의 2.2배)
- 위치 :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남동지역
- 기후 : 대륙성 사막기후
- 주요민족 : 투르크멘인 85%, 우즈베크인 5%, 러시아인 4% 기타 6%
- 언어 : 투르크멘어(공식언어), 러시아어(통용어)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89%), 동방정교(9%), 기타(2%)

□ 정치현황

- 국가 독립 : 91.10.27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 의회 : 단원제(Mejilis, 125석, 임기 5년)
- 정부주요인사
 - 대통령 : 베르디무하메도프(Berdimuhamedow)
 - 부총리 겸 외교장관 : 메레도프(R. Meredov)
 - 국회의장 : 누르베르디예바(A. Nurberdiyeva)
- 국제기구 가입 : UN(92.3)
- 정치정세
 - 95.12 유엔에서 영구중립결의안 채택
 - 06.12 니야조프 대통령 사망
 - 07. 2 베르디무하메도프 제2대 대통령 당선, 취임
 - 08. 9 신헌법 채택(대통령 및 국회 권한 강화, 인민평의회 폐지, 시장경제체제 도입)
 - 12. 2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재선

□ 경제현황

- GDP : 299억불('12(IMF)), 1인당 GDP : 5,330불('12)
- 화폐 : 마나트(Manat)(1\$=2.843 마나트, '13.9)
- 주요자원 : 석유(확인 5억배럴, 추정 385억 배럴) 천연가스(20조m³, 매장량 세계 4위), 유황, 요오드
- 주요수출품 : 면사, 천연가스, 석유
- 교역('12) : 수출 : 154억불, 수입 : 101억불
- 기타
 - CAC I,II,IV(Deryalyk-유럽) 라인 등 총 8,000km의 가스파이프라인 보유(2009년 투르크-(우즈베크, 카자흐)-중국 노선 개통)
 - 세계 최대 관개수로 운용(Karakum 운하) · 1,300km, 70만ha 지역에 용수공급(1954년 건설)
 - 추진 중인 주요 가스관 건설
 - 투-아프간-파키스탄-인도(TAPI) 노선
 - Trans Caspian 노선(NABUCO 프로젝트: 크 투르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터키 연결)

□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92.2.7, 상주대사관 개설(07.6.8)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2)
 - 수출 : 1.95억불(탈황시설 철강제품, 덤프차, 차량)
 - 수입 : 83만불 (원면 등 섬유제품)
- 신임장 제정
 - 96.10 이정빈 주러대사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 07.12 김종열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1. 4 안명수 대사 신임장 제정
- 무상원조 : '91-'12(172만불: 물자지원 등)
- 재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 1050명
- 재투르크메니스탄 재외국민 : 150명('12)
- 주요 인사교류
 - 07.12 호자무하메도프 석유가스광물장관 방한
 - 08. 1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 방투
 - 08. 2 한쿨리에프 도로교통장관 방한
 - 08. 2 누르베르디예바 국회의장 방한
 - 08. 4 이재훈 지경부 제2 차관 방투
 - 08. 5 한승수 국무총리 방투
 - 08. 6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방투
 - 08. 8 이윤호 지식경제장관 방투
 - 08.10 타기예프 부총리 방한
 - 08.10 조중표 대통령특사 방투
 - 08.11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방한
 - 09. 4 조 현 에너지자원대사 방투
 - 10. 4 김종용 에너지자원대사 방투
 - 10. 4 이상득 대통령특사 방투
 - 10.11 베르쿨리에프 도로교통부 장관
 - 10.10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방투
 - 11.11 네디로프 석유가스광물부 장관, 아바예프 대외경제무역부 장관, 바이라도프 건설부 장관 방한
 - 12. 5 아파굴리에프 섬유부총리 방한
 - 13. 2 누르베르디예바 국회의장 방한
- 협정체결 현황
 -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8.12.6 발효)
 - 항공협정(09.1.5 발효)
 - 정부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협정(08.11.6 발효)
 - ※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09.11)

□ 북한과의 관계

- '92.1.10 외교관계 수립, 주러시아대사관에서 겸임
- '08.6.23 김영재 주러시아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주요협정 : 통상경제협력협정





4. 키르기스스탄

□ 일반사항

- 수도 : 비쉬켄(Bishkek), 80만명
- 인구 : 560만명('12)
- 면적 : 198,500km²(한반도의 0.95배)
- 위치 : 중앙아시아(중국, 카자흐, 우즈베크, 타지키스탄 접경)
- 기후 : 대륙성, 건조 기후
- 주요민족 : 키르기즈인 70%, 러시아인 8.4%, 우즈베크인 14.5%, 위구르인 1%
- 언어 :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 종교 :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중앙이 최초로 의원내각제 도입(10.6.27, 헌법개정)
- 정부주요인사
 - 대통령 : 아탐바예프(Atambaev)
 - 총리 : 사티발디예프(Satybaldiv)
 - 외교장관 : 아브딜다예프(Abdyldaev)
- 국제기구가입 : UN(92.3), WTO(98.2)
- 정치정세
 - 90.10 아카예프 초대대통령 취임
 - 91. 8 독립선언
 - 05. 3 톨립혁명으로 아카예프 대통령 사임
 - 05. 8 바키예프 대통령 취임
 - 10. 4 반정부 시위로 정권교체 및 과도정부 수립
 - 10. 6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의원내각제 도입
 - 10. 7 오토바예바 대통령 취임
 - 10.10 총선
 - 10.12 연합정부 구성 및 아탐바예프 총리 내각 출범
 - 11.10 대선(아탐바예프 총리 대통령 당선)
 - 11.12 아탐바예프 대통령 취임

□ 경제현황 *WORLD BANK / EIU

- GDP('12) : 64.7억불
- 1인당 GDP('12) : \$1,160
- 산업구조('11) : 서비스업(51.9%), 농업(20.2%), 제조업(27.8%)
- 화폐단위 : сом(Som) 1\$=48.97сом('13.8월 기준)
- 교역규모('12) : 64억불
 - 수출 : 17억불/ 수입 : 47억불
- 주요자원 : 금, 석탄, 안티몬, 수은, 천연가스 등

□ 우리나라와의 관계 *KITA

- 외교관계수립일 : 1992.1.31
- 공관설치 : 2007.9 1인 공관개설(이경렬 대사대리)
2008.7 대사관개설(12.3 김창규 대사)

- 주한공관설치 : 2006.1 영사관개설(에살리에프영사)
2008.5 대사관개설(11.8 초토노프 대사)
- 교역규모('12) : 1.6억불
 - 수출 : 1억 6천만불(중전기(heavy electirc), 가열난방기, 컴퓨터 부품)
 - 수입 : 21만불(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 키르기즈 투자('12, 누계, 신고기준) : 1.37억불
- 고려인동포 : 2만여명(한국교민 1300여명)
- 주요협정
 - 97. 6 한·키 관계 원칙과 협력공동선언, 문화협정, 외교부간 협력의정서
 - 98.1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02. 4 SOFA 체결(동의 의료 부대 60명 아프간 전 지원을 위해 02.2-02.10간 마나스 기지 주둔)
 - 06. 7 항공협정
 - 06. 7 관광협정
 - 07.11 경제협력협정/투자보장협정 양국 문화부간 협력약정
 - 10.11 한·키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
 - 12.12 한·키 이중과세방지협정(미발효)
- 주요인사교류
 - 93. 8 칭기셰프 총리, 대전 EXPO 계기 방한
 - 94. 3 주마굴로프 총리, 세계일보사 초청으로 방한
 - 97. 2 미르자칸 국방장관 일행 비공식방한
 - 97. 6 아카예프 대통령 방한
 - 02. 4 아카예프 아산쿨 상원의원(대통령 친형)방한
 - 02.11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방기
 - 02.11 오토르바예프 부총리 방한
 - 04. 9 미티베크 검찰총장 방한
 - 04.10 주말리예프 부총리 비공식 방한
 - 06. 7 켈센쿨로프 외무장관 방한
 - 07. 8 이상수 노동부장관 방기
 - 07.11 아탐바예프 총리 방한
 - 08. 4 아이다달리예프 부총리 방한
 - 08. 8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기
 - 08.10 자파로프 경제개발통상부장관 방한
 - 09. 6 이브라예프 투자협력 대통령 전권대표 방한
 - 09. 8 이사예프 외교부 수석차관 방한
 - 10.11 아이트무르자예프 외교차관 방한
 - 12. 4 오토르바예프 경제부총리 비공식 방한
 - 12. 6 바바노프 총리 방한(제주평화포럼 참석)
 - 12. 7 카자크바예프 외교장관 방한
 - 12.12 칼람베토프 에너지산업부 장관 방한
 - 13. 5 한-키르기즈 의원친선협회 방기
 - 13. 6 쉬크마마토프 법무부 장관 방한
 - 13. 7 안홍준 외통위원장 대표단 방문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 91. 8 경북 구미시-비쉬켄市간 자매결연
 - 07.11 전라남도-추이주간 협력약정 체결
 - 09. 3 포항市-비쉬켄市간 교류의향서 체결



5. 타지키스탄

□ 일반사항

- 수도 : 두산베(Dushanbe, 56만명)
- 인구 : 790만명
- 면적 : 143,100km² (한반도의 0.6배)
- 위치 : 중앙아시아(우즈베크, 키르기즈, 중국, 아프간 접경)
- 기후 : 대륙성 기후
- 주요민족 : 타지인 64.9%, 우즈베크 25%, 러시아인 3.5%, 기타 6.6%
- 언어 : 타지어(러시아어 공용)
- 종교 : 이슬람교 90%(수니파 85%, 시아파 5%)
러시아 정교 등 기타 10%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7년, 삼선 연임 불가)
- 의회 : 양원제(상원 33석, 하원63석)
- 정부주요인사
 - 대통령 : 라흐몬(E. Rahmon)
 - 총리 : 아킬로프(A. Akilov)
 - 외교장관 : 자리피(H. Zarifi)
- 주요정당 : 인민민주당, 공산당, 이슬람부흥당
- 국제기구가입 : UN(92.3)
- 정치정세
 - 94.11 라흐몬 대통령 최초 민선 대통령 당선
 - 구소련방 해체이후 공산정권과 반군 회교세력간 내전이 지속 되었으나 97.6 UN과 러시아의 적극 개입으로 정부와 반군간 평화 협정 서명
 - 99.11 라흐몬 대통령 재선
 - 03. 6 개헌(삼선 연임 불가)
 - * 2006년 선거부터 적용
 - 06.11 라흐몬 대통령 당선

□ 경제현황 (World Bank, 12년 기준)

- GDP('12) : 70억불
- 1인당 GDP : \$872
- 화폐단위 : 소모니(1\$=4.79/13.8월)
- 교역규모('12, EIU) : 56억불
 - 수출 : 17억불
 - 수입 : 39억불
- 주요자원 : 금, 은, 대리석, 우라늄, 니켈 등
- 외환보유고('12) : 4.16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2.4.27

- 공관설치 : 2008.6월(주우즈베크 대사 겸임)
※ 현 연정구 대사대리(11.9월 부임)
- 교역규모('12) : 0.84억불
 - 수출 : 3,800만불(기계류, 섬유화학제품)
 - 수입 : 4,600만불(면화, 알루미늄)
- 대타직 투자('12, 누계, 신고기준) : 6,300만불
- 고려인 동포 : 640여명
- 제타직 교민 : 120여명(두산베100명, 후잔드20명)
- 주요협정 : 투자보장협정(95.8),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 면제협정(12.7), 이중과세방지협정(13.7),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08.10 가서명),
- 주요인사교류
 - 92. 나자로프 외교장관 방한
 - 94. 6 알리모프 외교장관 방한
 - 96. 6 자리피 외교차관 방한
 - 97. 2 사파로프 대통령보좌관 방한
 - 01. 4 바바예프 국가경제고문 방한
 - 04. 3 카리모프 환경·삼림보호위원회 위원장 방한
 - 04. 5 파이즐라예프 보건부장관, 나지로프 수자원관리부장관 방한
 - 04.11 주바이도프 외교부 의전장 방한
 - 05. 5 라흐몬 대통령 방한
 - 07. 6 자리피 외교장관 방한(ACD 회의 계기)
 - 07. 1 울다세프 외교차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08.12 울다세프 외교차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09.12 나즈미디노프 대통령실 대외경제투자 담당국장 방한(한-중앙아 포럼)
 - 11. 6 주후로프 하원의장 방한
 - 12. 7 자리피 외교장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12. 7 다블라토프 제1부총리 방한(여수엑스포)
 - 13. 5 한-타 의원친선협회 방타
 - 13. 7 타-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 ※ 95.10 김영삼 대통령 UN 50주년 특별총회 계기 한·타직 정상회담(뉴욕)
- ※ 08. 9 제63차 UN 총회 계기 한승수 총리 타직 라흐몬 대통령 면담(뉴욕)
- ※ 08.10 제7차 ACD 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아스타나)
- ※ 12. 7 제6차 한중앙아 포럼 계기, 외교장관 회담(서울)

□ 북한과의 관계

- 92.2 외교관계 수립
- 95.9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 방문



참고 2 중앙아시아 한국 기관 및 주요 웹사이트

1. 현지 대사관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 kaz.mofat.go.kr/
카자흐스탄 알마티 총영사관 : 전화 7-727-246-8897, 8898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 uzb.mofat.go.kr/
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 tkm.mofa.go.kr/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 kgz.mofa.go.kr/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 : tjk.mofa.go.kr/

2. 현지 코트라 사무소

알마티 카자흐스탄 사무소 : www.kotra.or.kr/almaty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 www.kotra.or.kr/tashkent

3.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기관

전국경제인연합 : www.fki.or.kr/
코트라 : 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 www.korcham.net/
중소기업 중앙회 : www.kbiz.or.kr/
한국수출무역보험공사 : www.ksure.or.kr/

4. 중앙아시아 정보 관련 주요 한국어 웹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eurasia/main.do>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http://central-asia.or.kr/xen/>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럼 global window
<http://www.globalwindow.org/>
한국무역협회(무역 통계)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투자 통계)
<http://www.koreaexim.go.kr/>



참고 3 뉴 실크로드협의회(NSR) 소개

□ 개 요

- (배경) '09.5월 이명박 대통령 우즈벡·카자흐 순방 후속조치로 기업진출 지원과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목적) 중앙아 경제정책, 시장환경, 투자여건, 진출 노하우 등 정보 수집, 애로해결 등으로 기업진출 지원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
 - 국가별 수요에 부응하는 新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안 등 상생의 협력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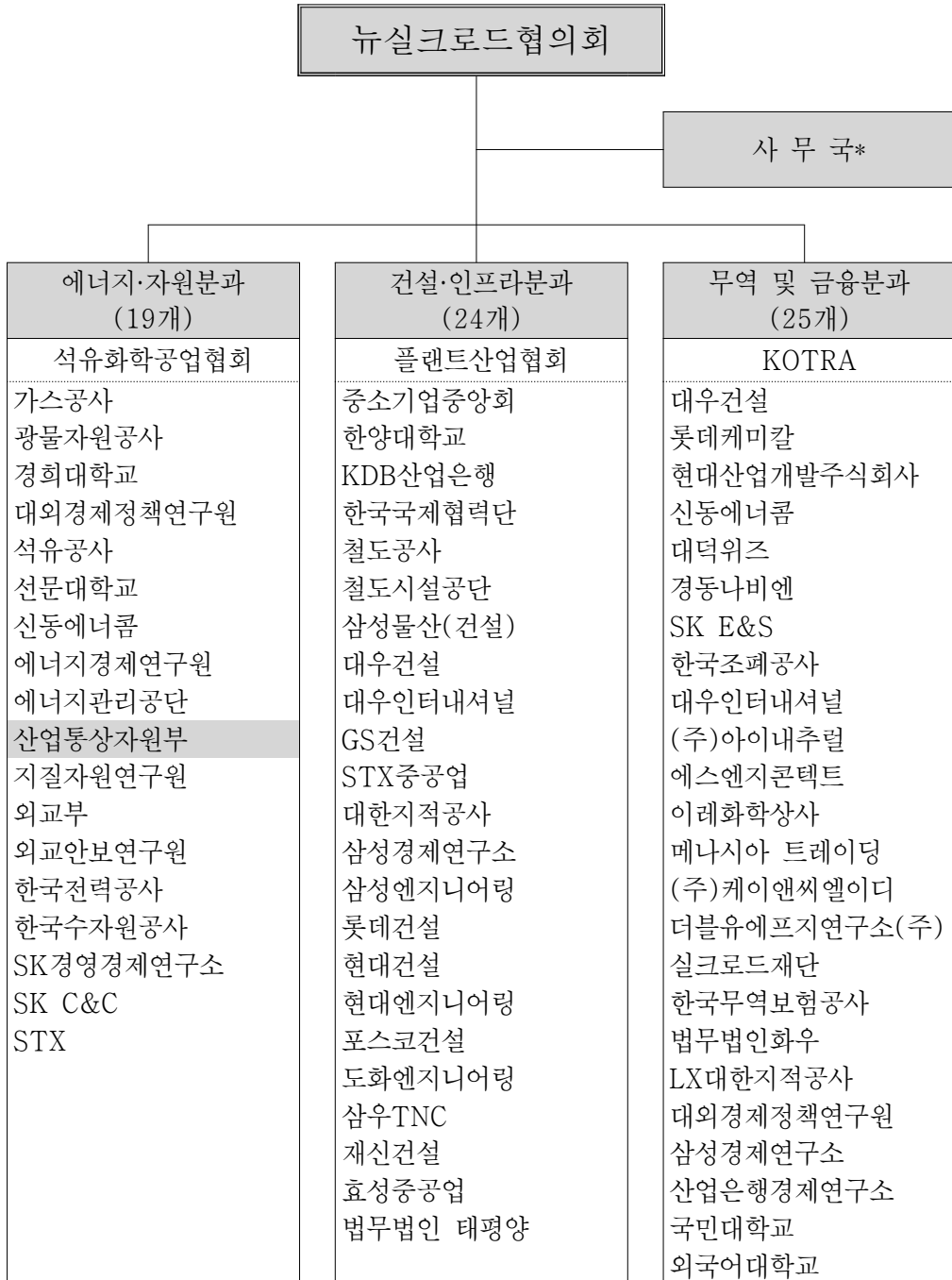
□ 협의회 구성도 : 불임

□ 개최실적

- 제1차(출범식) : '09.11.19(목) 11:00 서울 프라자H
- 제2차 : '10. 3.4(목) 11:00 서울 프라자H
- 제3차 : '10.8.24(화) 07:30 롯데H
- 제4차 : '10.11.24(수) 11:00 여의도
- 제5차 : '11. 5. 24(화), 7:30 그랜드인터콘H
- 제6차 : '11.10.5(수) 08:00, 그랜드인터콘H
- 제7차 : '11.12.13(화) 11:00, 그랜드인터콘H
- 제8차 : '12.4.24(화), 11:30 롯데H
- 제9차 : '12.10.30(화) 11:30 롯데H
- 제10차 : '12.12.27(목) 11:00 롯데H
- 제11차 : '13.4.30(화) 11:00, 롯데H
- 제12차 : '13.11.26(화), 11:00, 롯데H



< 뉴 실크로드협의회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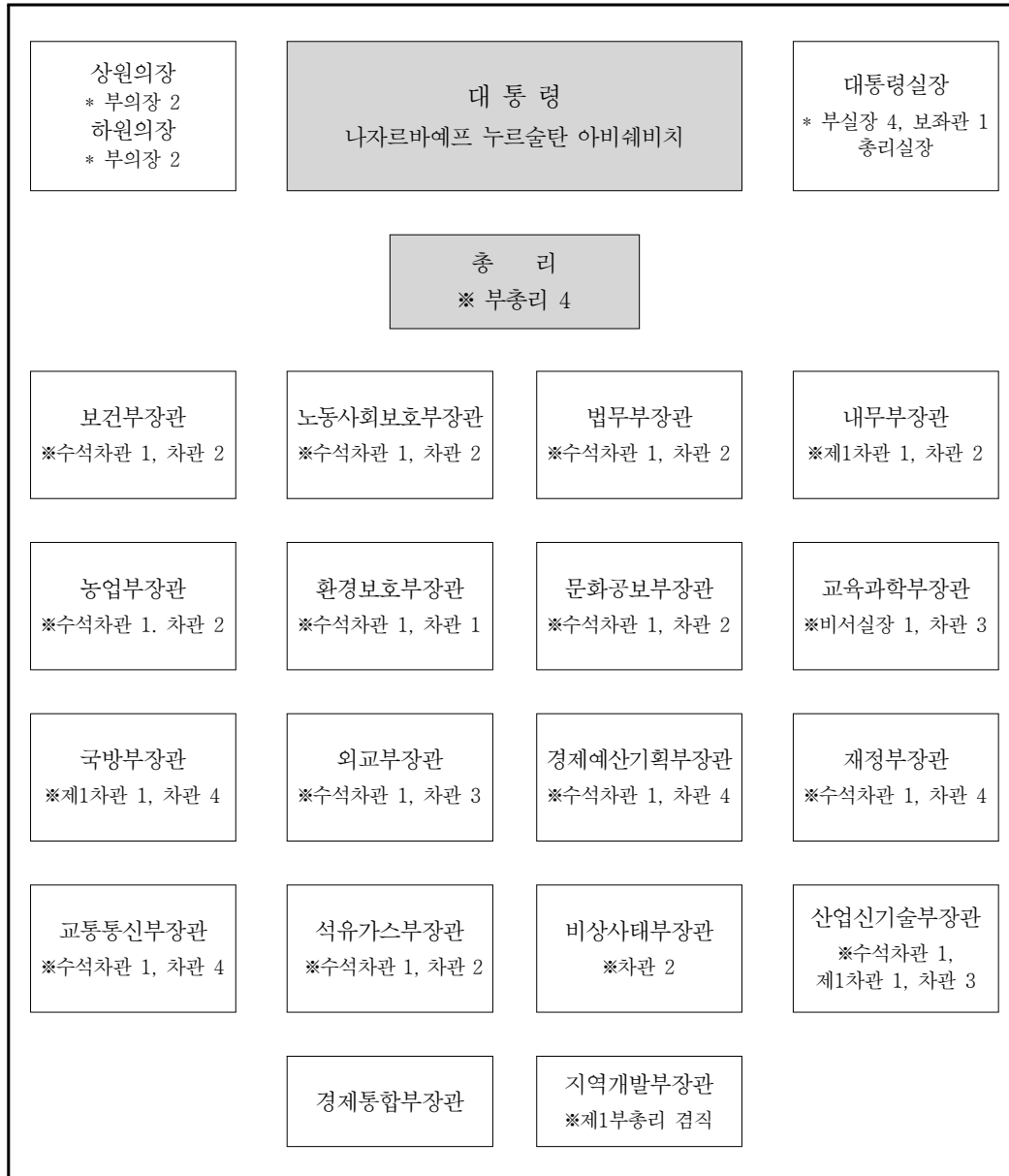


* 사무국은 '10년부터 매년 전경련 → 무역협회 → 대한상의 순으로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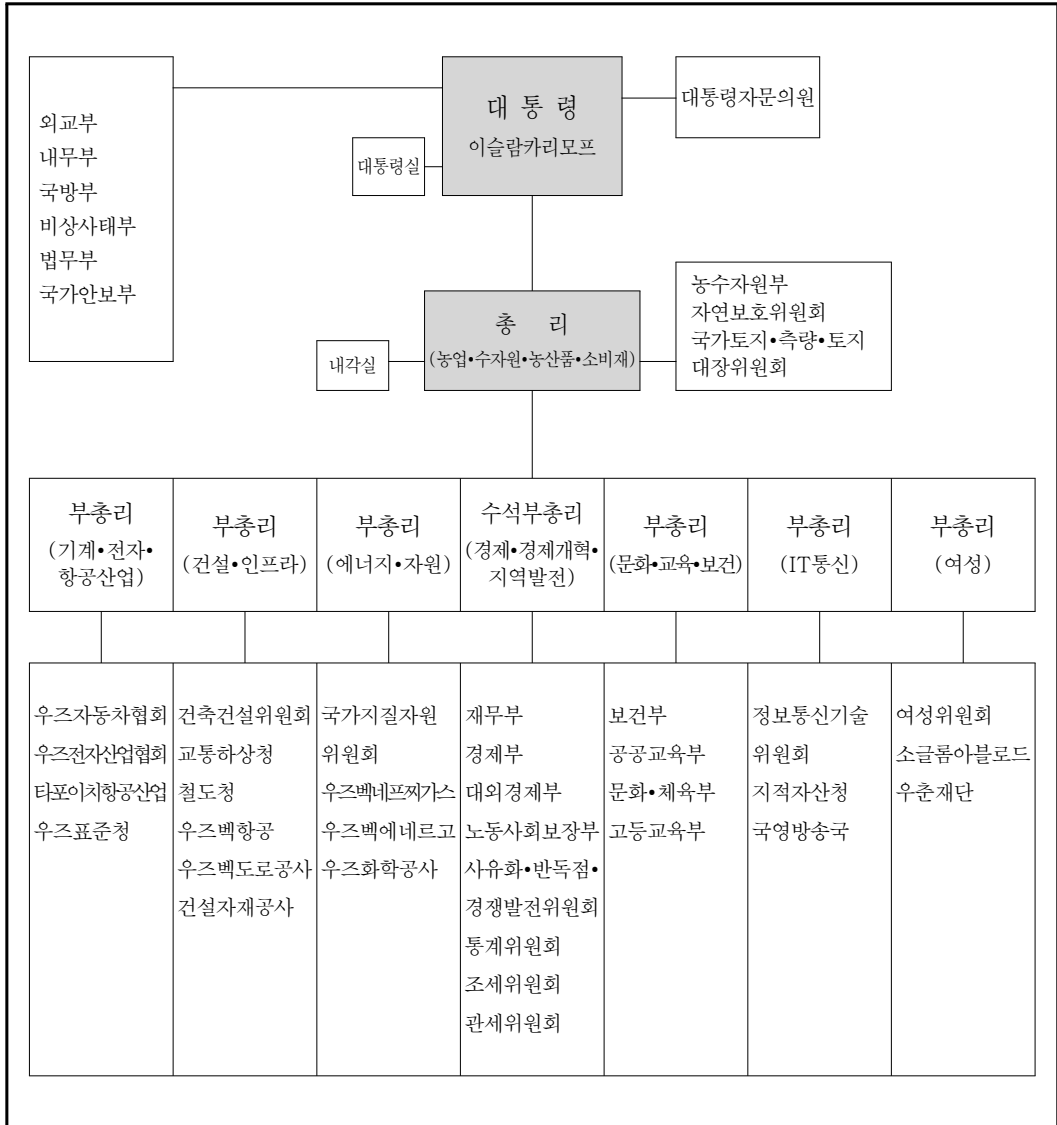
참고 4 각국 정부조직도

1. 카자흐스탄





2. 우즈베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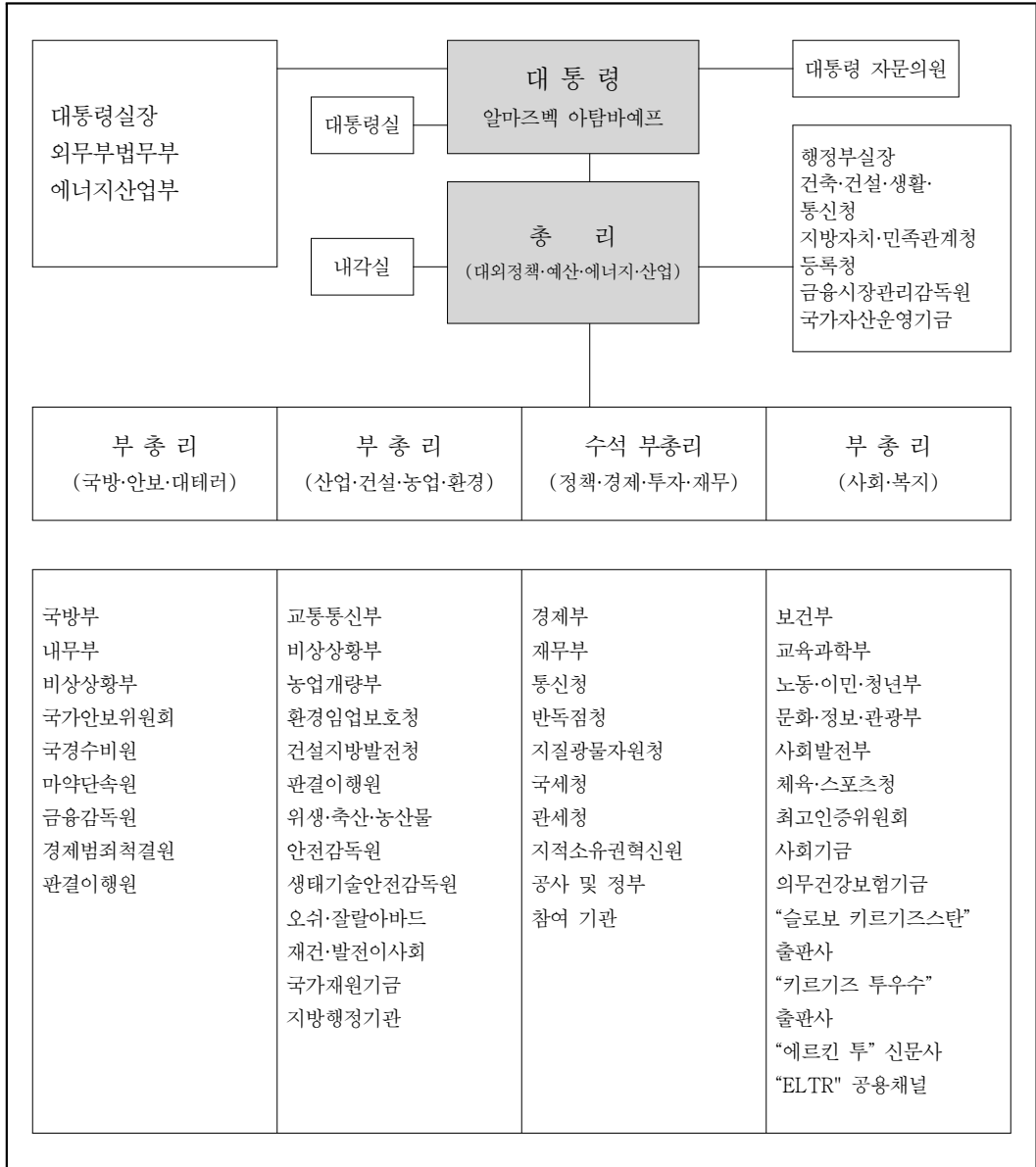
3.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부의장	대 통 령 베르디무하메도프 구르반굴리 말리크굴리에비치 총리 겸직	대통령수석비서관 대변인	
재정경제부총리 - 재정경제, CIS 경제 위원회 대표, 경제개발	섬유카펫트교역부총리 - 섬유산업, 교역	농업단지부총리 - 농업, 아탈구호국제 기금 투르크멘대표, 가족증산기구	교육과학보건관광부총리 - 교육·보건, 과학·관광, 질병통제위원장
경제개발부장관 - 경제, 개발	섬유부장관 - 섬유산업, 섬유기구	농업부장관 - 농업	보건의료산업부장관 - 보건, 의료산업
재무부장관 - 재정, 국가포트폴리오, 세계은행 투르크멘대표	대외경제무역부장관 - 무역, 대외경제, 투르크멘-사우디, 투르크멘-우즈베크, 투르크멘-이집트 경협공동위원장	수자원부장관 - 수자원	교육부장관 - 교육
		자연보호부장관 - 자연환경보호, 국립공원	노동복지보호부장관 - 노동, 복지
			국내경제부장관 - 국내경제
문화정보부총리 - 문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신문	국제관계외교부총리 - 국제관계, 외교, ※ 외교부장관 겸직	건설부총리 - 건설, 건설자재산업	산업전력교통통신부총리 - 전력, 교통·통신
문화부장관 - 문화, 영화, 박물관	외교부장관 - 국제관계, 외교, 카스피해 문제 담당	건설부장관 - 건설	산업부장관 - 중공업, 경공업
			에너지부장관 - 에너지
			철도교통부장관 - 철도·역
			차량운송부장관 - 육상운송 업무
			통신부장관 - 통신, 인터넷, 전화망
석유가스부총리 - 석유·가스, 석유자원 활용관리, 국제석유가스 기업담당 ※ 한-투르크멘 공동위 공동위원장	국가안보부장관 - 국가안보	국방부장관 - 국방, 군사	내무부장관 - 국내치안유지, 경찰
석유가스광물자원부장관 - 석유·가스, 광물자원			법무부장관 - 법무





4. 키르기스스탄





가이드 북 발간에 참여해 주신 분

자문위원

강명구 : 수석연구원, 중앙대학교 및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박사, 산업은행 근무
mgk101@kdb.co.kr

김영옥 : 변호사,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MGIMO) 법학과 박사,
법무법인 미르 근무
una1113@naver.com

김익준 : CIS 물류 전문가,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 박사, 에코비스 대표
kimij@ecovoice.co.kr

배정환 :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시 50회, 카자흐스탄 Law Firm AK 대표
mirahanj@gmail.com

심재길 : 회계사, 홍익대 경영학과, KPMG 카작 주재 근무
jwon1@kpmg.kz

오영일 : 수석연구원, 러시아 경제대학 박사, 포스코 경영연구소 근무
youngil@posri.re.kr

윤성학 : 교수, 연대 정치학과 박사, 고려대 러시아CIS 연구소 근무
dima7@korea.ac.kr

윤영호 : 금융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Seven Rivers Partners 대표
y.youn.yuri@gmail.com

이미영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부 근무
Lmy0214@ksure.or.kr

이승민 : 변호사,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MGIMO) 박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근무
smlee@jipyong.com

이원형 : 변호사,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대학원 국제사법학과,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lawcase@hanmail.net

■ ■ ■ 뉴 실크로드협의회 관련 임원

엄치성 : 공동의장(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

조현만 : 운영위원(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

정성래 : 운영위원(전국경제인연합회 과장)

김평중 : 에너지·자원 분과 위원회(석유화학공업협회 본부장)

이상호 : 건설·인프라 분과 위원회(플랜트산업협회 본부장)

정영화 : 무역·금융 분과 위원회(대한무역투자공사 팀장)

최민희 : 무역·금융 분과 위원회(대한무역투자공사 과장)

■ ■ ■ 정 부

윤상흠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박재홍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사무관

박혜자 : 외교부 유라시아과 2등 서기관